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accreditation standards and regulations
for new medical school)

201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사업

이 보고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에 의해 수행된 것이며,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적인 의견이며 대한의사협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제 출 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귀하

이 보고서를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10. 31.

연구책임자 : 김영창

연구원 : 김석용

연구원 : 나승주

연구원 : 양은배

연구원 : 윤태영

연구원 : 이근미

연구원 : 홍승재

요 약 문

I. 제 목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발 연구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1998년 제주 의대를 마지막으로 의학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2030년에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와 최근 폐교한 서남의대의 입학정원을 두고 의학교육기관 신설 요구가 증가하였음.
- 의학교육을 위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교하여 줄곧 부실한 교육을 제공한 서남 의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설 의학교육기관의 질 보장 및 질 관리를 위하여 대학설립 및 개교 단계부터 평가인증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현행 의학교육기관 설립과정과 규정, 외국의 신설 의학교육기관 인증절차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과 규정을 수립하여 정책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의학교육기관 설립과정과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관련 규정 분석 및 문제점 도출
2. 미국, 영국, 호주,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 신설 의학교육기관 인증 절차 분석
3.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의 시기, 내용, 단계별 인증기준 적용, 연구진 인증기준 초안에 대한 의학교육전문가 포커스 그룹 의견 수렴
4. 현행 의학교육기관 설립단계에서의 평가인증 필요성, ‘예비인증’과 ‘임시인증’의 시기와 불인증 시 필요한 조치, 단계별 평가인증 적용 기준에 대한 의학교육관계자 의견 수렴

5.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단계별 적용 기준안 개발 및 타당화
6.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중 ‘신설대학 인증’ 규정 개정안 개발 및 타당화

IV. 연구결과

1. **대학설립절차 및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분석 결과:** 설립인가 심의과정에 의학교육전문가 또는 관련기구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의학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는 개교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2년 내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교 전의 준비상황은 평가할 수 없고,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1년 내 재평가 외에 별도의 조치가 없음.
2. **외국의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절차 분석 결과:** 미국과 영국은 의학교육기관 설립 단계부터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음. 미국은 예비인증을 받은 대학만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영국은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정보, 재원확보에 대한 재정회계감사, 방문평가를 통해 의학교육프로그램 운영 자격이 주어져야 학생을 모집할 수 있음. 영국의 경우는 첫 입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매해 평가인증을 받아야 함. 호주는 국가로부터 대학설립 인가를 받으면 평가인증기관에서 의학교육 시작 15-18개월 전에 교육과정 준비정도를 평가함. 이후에는 전체 교육과정, 첫 2년 동안의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평가계획, 교수, 재정, 시설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한 자료로 인증을 받아야 함.
3. **의학교육전문가 포커스 그룹 자문 및 의학교육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의학교육기관 설립 단계에서 의학교육 관련 기구가 참여해야 함.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의 내용에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대학 설립 시 갖추어야 하는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여부도 포함해야함. 부실의대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인가 후 ‘예비인증’을 받아야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규정 수정이 필요하며, 이행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매해 평가인증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구진이 개발한 ASK2019 인증기준의 1~4단계별 인증기준안은 적절하나 신설 의학교육기관 입장에서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함.
4.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발:**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에

ASK2019 인증기준을 적용하되, 설립 및 교육과정 시행 시기에 따라 1단계를 개교 전 (설립인가 이후 학생 모집 전, ‘예비인증’), 2단계를 개교 후, 3단계를 임상실습 시작 전, 4단계를 첫 졸업생 배출 직전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적용할 평가기준안을 개발하였음. 기준이 처음 적용되는 단계에서는 계획의 준비여부만 평가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단계에 ‘◎’로 표기하였음.

연구진은 기존 의평원의 신설대학 인증규정의 내용을 검토하여 ‘예비인증’을 받은 기관이 학생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고, 개교 후부터 ‘임시인증’을 매년 받도록 하여 평가의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음. ‘임시인증 불가’를 받을 경우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해에 신설대학에 적용하는 ‘평가인증’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음.

V.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일정 수준의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여건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 한 뒤 학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학설립 및 평가인증 관련 법규에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설립 인가 이후부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법규 개정의 제안 근거로 활용될 것임.
- 연구진이 개발한 신설대학 평가인증 기준은 ASK2019 기본기준을 기반으로 4 단계별 적용 가능하며, 신설대학 입장에서 계획과 계획의 이행실적을 구분하여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현행 Post 2주기 기반 신설대학 인증기준을 대체하는데 즉각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신설대학 인증 규정안도 의학교육평가원 인증제도위원회의 검토를 받았으므로 내부 회의를 거쳐 정식 규정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치의학, 간호학 등 보건의료계열 인증기관의 신설대학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발 시 좋은 모델이 되어 타 학문분야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SUMMARY

I . Title

Development of accreditation standards and regulations for new medical school

II . Purpose

New medical school has not been established in Korea since 1998, when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was established. However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demand for a new medical school based on research results done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isclosing that there will be shortage in numbers of doctors in Korea by year 2030, and in reference to recent closing of Seonam University Medical School.

In order to prevent the poor quality of medical education, mandatory accreditation from the stages of foundation and school opening should be discussed in order to assure and maintain the quality of new medical schools in terms of education programs and enviro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olicies on accreditation of new medical schools by examining current procedures and regulations of establishing medical schools and analyzing processes of accreditation of new medical schools in other countries to extrapolate improvements.

III. Contents and Scope

1. Analyses the accreditation regulations regarding new medical schools and draw the problems of current establishment procedure of medical school.
2. Analyses the establishment procedure of new medical school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World Federation of Medical Education

(WFME).

3. Collection of opinions from medical education professionals focus group on the drafts of new medical school accreditation in terms of timing, standards and application of different standards according to stages.
4. Collection of opinions from medical education professionals on the need for accreditation in founding stage of medical schools currently in action, timing of “preliminary-accreditation” and “provisional accreditation” and measures to be taken in cases of non-accreditation, and application standards of accreditation in different stages.
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tandard for application of accreditation through different stages in new medical schools.
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regulation revision on “accreditation of new school” within regulations of 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KIMEE).

IV. Results

1. **Results of analyses of regulations regarding accreditation of new medical schools and current establishment procedures of university** : Because there was no guarantee of participation of medical education professionals or related organizations in evaluation processes of establishment authorization, professionalism and specificity of medical education are not being considered. Regulations of accreditation of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mandates application for the accreditation within 3 months of school opening and accreditation within 2 years after application, disallowing evaluation of preparation prior to opening. There are no methods of repercussion, in cases of non-authorization, other than to re-evaluate within a year.
2. **Results of analyses of accreditation processes of new medical schools in foreign countries** : The U.S. and the U.K. have strict control from the stages of establishment of medical schools. In the U.S. only the schools with preliminary-accreditation are allowed to recruit students. the U.K. allows schools to recruit students only after they obtain qualification for operations of medical

education program which is given after being inspected for basic informations of education courses, after financial audits for confirmation of financial resources, and after visit evaluation. The U.K. requires annual accreditation of a school until the time of graduation of the first admitted student. In Australia, once a school receives approval for establishment from the government, an accrediting institution evaluates preparation of education courses 15 to 18 months prior to beginning of medical education. After that, the school is required to be accredited based on data covering complete education courses, elaborate education courses and evaluation plan for the first 2 years and specific plans on acquisition of facility, financial resources, and staff members.

- 3. Results of collecting opinions of medical education professionals focus group and medical education related personnels :** There need to be medical education-related groups involved in stages of foundation of medical schools. Evaluations on acquisitions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required in establishment of a college need to be included in the contents of accreditation of a new medical school, on top of that on education programs. In order to prevent insufficient medical school, a change in law/regulation need to be made so that a school, after establishment authorization can only recruit students after obtaining ‘preliminary accreditation.’ Accreditation on execution performance and future plans is recommended annually. The accreditation standard ASK2019, developed by KIMEE, in application of its stages 1 to 4 are appropriate but need minute changes in the aspect of a new medical school.
- 4. Development of rules and standard of accreditation of new medical schools :** The ASK2019 is to be applied in accreditation of new medical schools. Standards for new medical school to be applied in different stages have been developed. The stages are classified as follows; stage 1 prior to school opening (prior to student recruitment, after authorization), stage 2 after school opening, stage 3 prior to clinical clerkship, and stage 4 immediately prior to first graduation output.

After reviewing current accreditation rules of new schools by KIMEE, we have made changes in regulations so that institutions that have ‘preliminary accreditation’ are to recruit students, and that yearly ‘provisional accreditation’ should be given to prevent loss of coverage by accreditation. A content was added

that stated, in case a school receives ‘provisional accreditation disapproval’, student recruitment shall be stopped, and accreditation evaluation should be given the year of the first graduation output.

V. Utilization of Results

A school shall be allowed to recruit students and start education after a certain level of educational resources are secured and proper educational programs and conditions are confirmed. Therefore, it will be used as a basis for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law that reflects the fact that a new medical institution needs to obtain accreditation from the Korea Institute of Education and Evaluation.

The standards for accreditation of new medical school developed by the research team can be applied in four stages based on the basic standards of ASK2019. Since accreditation standards are offered distinguishing plans and executional performance of plans from the aspect of new school, the standards can be used immediately to replace the current standards for accreditation of new schools based on Post 2 cycles. In addition, since the accreditation policy for new medical school was reviewed by the policy committee of 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it can be used as a formal regulation after an internal meeting.

It can serve as a good model for developing standards and regulations for other health care accreditation bodies, such as that of dentistry or nursing, providing a leading role to other academic fields.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Section 1. Necessity and Purpose of Research	1
Section 2. Content and Scope of Research	3
 Chapter 2.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Status	6
Section 1. Analysis of the procedures and regul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medical school	6
1. Higher Education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Higher Education Act	6
2. Private School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Private School Act	8
3. Regulations for Establishment of University and Enforcement rule of Regulations for Establishment of University	8
4. Analysis results of regulations related to university establishment	12
 Section 2. Analysis of accreditation regulations for a New Medical School	16
1. Act related to a New Medical School	16
2. Regulations for the Accreditation of Medical Education of KIMEE(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18
 Section 3. Cases of accreditation standards and regulation for new medical schools in foreign countries	21
1. Accreditation of new medical education program by LCME in the U.S.	21
2. Authorization of school establishment by General Medical Council (GMC) in the U.K.	26
3. Accreditation of new medical schools by 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29
4. Guidelines on new medical schools by World Federation of Medical Education (WFME)	30
5. The implications of foreign cases	31

Section 4. Preceding studies	32
1. Studies on the University of Medicine in the 1990s	32
2. Studies on establishment and accreditations of new medical schools	33
Chapter 3. Research contents and results	37
Section 1. Analyses and collection of opinions on demand for improvements in standards and regulations of accreditation to new medical schools	37
1. Interview of medical education professionals focus group	37
2. A survey of opinions on improvements in standards and regulations of accreditation to new medical schools	41
Section 2. Improvement suggestions in standards and regulations of accreditation to new medical schools	44
1. Accreditation standards for new medical schools	44
2. Accreditation regulations for new medical schools	55
Chapter 4. Achievement of Research Objectives and External Contributions	60
Chapter 5. Utilization Plan of Research Result	62
Chapter 6. References	64
Appendix	65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제2장 국내·외 연구 현황	6
제1절 의학교육기관 설립 절차 및 관련 규정 분석	6
1.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6
2.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8
3.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8
4. 대학설립 관련 규정 분석 결과	12
제2절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분석	16
1.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관련 법령	16
2.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18
제3절 외국의 신설 의학교육기관 인증 기준 및 규정 사례	21
1. 미국 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의 신설의대 의학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21
2. 영국 General Medical Council의 신설대학 평가인증	26
3. 호주 Australian Medical Council Limited의 신설의대 평가	29
4.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의 신설대학 가이드	30
5. 외국 사례의 시사점	31
제4절 선행연구	32
1. 1990년대 신생 의과대학 관련 연구	32
2. 신설 의학교육기관 설립 및 평가인증 관련 연구	33

제3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37
제1절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선에 대한 요구분석 및 의견수렴	37
1. 의학교육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37
2.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선 의견조사	41
제2절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선방안	44
1.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안	44
2.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안	55
제4장 연구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60
제5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62
제6장 참고문헌	64
부록	65

표 목 차

〈표 1〉 연구내용 별 연구방법	4
〈표 2〉 LCME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단계	21
〈표 3〉 LCME 평가인증 신청자격 자격기준	22
〈표 4〉 GMC 신설대학 인증평가 영역	27
〈표 5〉 WFME 신설대학 가이드 기준	31
〈표 6〉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적용 단계 및 시기	45
〈표 7〉 신설 의학교육 평가인증 단계별 인증기준 안	46
〈표 8〉 신설대학 인증 규정 현행-개정안 비교표	58

그 립 목 차

〈그림 1〉 연구 목적 및 연구목표	3
〈그림 2〉 대학설립 인가 절차	13
〈그림 3〉 신설 의학교육기관 대학설립, 인가 및 교육 단계	20
〈그림 4〉 신청자격 및 후보자력 인증 절차	22
〈그림 5〉 예비인증 절차	24
〈그림 6〉 임시인증 절차	25
〈그림 7〉 GMC 평가인증 과정	26

부 록 차 례

1.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전문	65
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78
3.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82
4. 대학설립 및 인가 신청서식(교육부 안내책자 발췌)	89
5. 의학교육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회의록	104
6. 의학교육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18
7.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단계별 기준안	12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17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2%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1] 2015년 12월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제정되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광고와 원력진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보건의료 환경 변화는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의사인력 수급문제도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8년 제주의대를 마지막으로 의학교육기관(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시킨 결과 현재 3,058명으로 정원이 고정되어 있다. 이에 입학정원을 늘리거나 의학교육기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의학교육기관의 신설은 정치적인 논리가 적용되기도 한다. 특히 대선이나 총선과 같은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학교육기관의 균형적 안배를 목적으로 의학교육기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발의되었던 법안은 1) 2016년 7월에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2) 2016년 9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3) 2016년 12월 당시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이 발의한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있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 3월에 위 발의된 법률안을 토대로 3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비용 추계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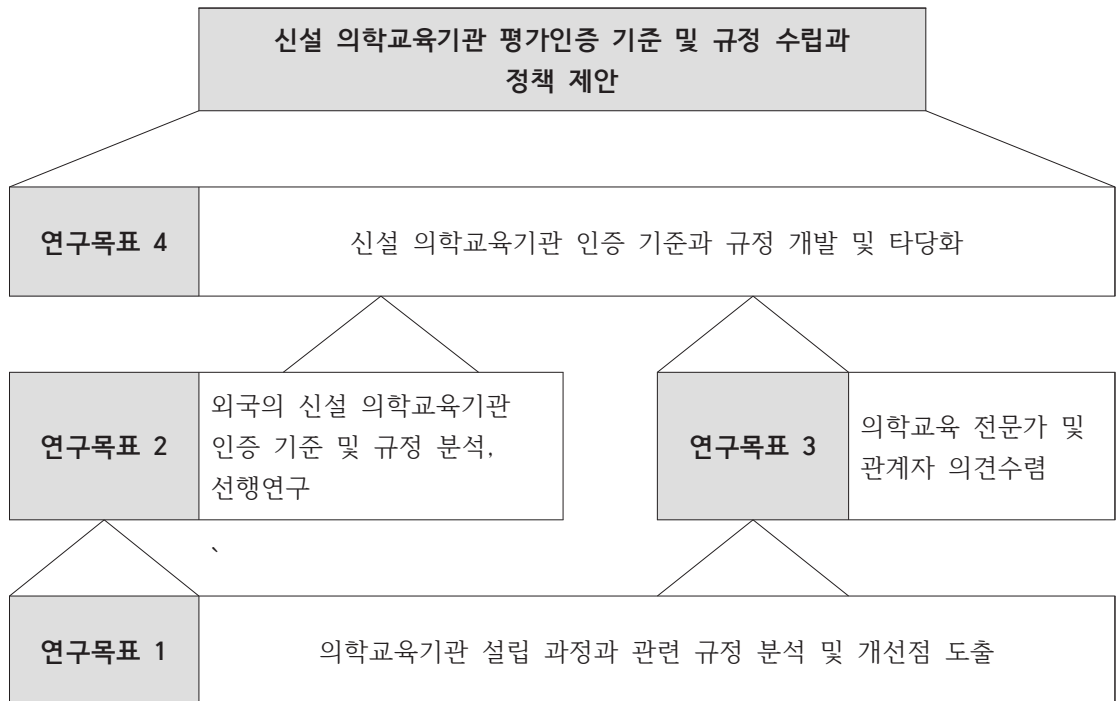
한편 2017년에 서남의대가 2016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불인증을 받았고, 같은 해 교육부에서 서남대 폐교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가 가지고 있던 49명의 정원을 두고 열띤 논의가 있었으며, 2018년 4월에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의과대학(원)을 설립하여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의무 복무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서남의대가 폐교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생교육을 담당하기에 준비가 미흡하였음에도 인가 후 시설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설립 인가를 내주었다는 것이다. 서남의대는 개교 이후로도 임상실습을 위한 부속병원의 부재와 잦은 변경,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가르치기 위한 교원이 부족하여 의료인 양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여건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결국 폐교 수순을 밟았다.

의학교육은 그 특성상 기초의학실습과 기본임상술기실습을 위한 공간, 임상 실습을 위한 병원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의학교육기관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양성하는 곳으로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며, 의학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의학교육기관 신설 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일정수준의 의학교육 질 보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경화(2016)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먼저 의과대학 설립을 인가해주면 그 이후에 한국의학교육인증평가원을 통해 인증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부실의대 양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기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3]

신생 의대라 부르던 의과대학들이 대부분이 최근 개교 2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들 대학은 현재 의료인,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선 인가-후 시설로 인해 개교 후 안정화가 될 때까지 상당시일 동안 많은 자원과 노력이 필요하였다.[4], [5], [6]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설 의학교육기관은 의학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과 재정을 개교 전에 미리 갖추어야 할 것이다. 신설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시점에서 서남의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신설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의학교육기관 설립과정과 평가인증에 관련된 규정을 분석하고, 외국사례와 의학교육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설 의학교육기관의 평가인증 기준과 규정을 수립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연구목표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목적 및 연구목표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 및 범위를 연구목표별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학교육기관 설립과정과 평가인증 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개선점 도출하였다. 고등교육기관 설립과 관련된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과 의학교육기관의 평가인증과 관련된 「의료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의학교육인증단규정 등 현행 법규 및 규정을 분석하여,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일정수준의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여건을 갖춘 후 개교하기 위한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외국의 신설 의학교육기관 인증기준 및 규정을 분석하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개발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에 미국 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LCME), 영국 General Medical Council(GMC), 호주 Australian Medical Council Limited(AMC), 세계의학교육연합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의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사례를 조사하고 함의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의학교육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의 적절한 시기, 방법, 적용기준의 적절성 등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학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의학교육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학교육전문가를 포커스 그룹으로 선정하여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여 의학교육학술대회에 참석자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기준 개발을 위해 국제적 기준에 맞춰 2019년도부터 도입할 예정인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의 의학교육 인증기준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의학교육기관 신설에 대한 연구, 기존 신생의대에서 발견된 문제들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과 규정 개발의 이론적 토대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은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과 규정을 개발, 타당화 검증을 통한 정책적 제안이다. 연구문제 1,2,3의 성과를 종합하여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의학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설립인가 후 첫 졸업생을 배출 시까지 단계별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내용 별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방법
1. 현행 의학교육기관 설립 과정과 관련 규정 분석 및 개선점 도출	■ 내용분석: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시행규칙, 대학 설립계획서 등 의학교육기관 설립과 관련된 규정 및 절차 내용 분석
2. 외국의 신설 의학교육기관 인증 기준 및 규정 분석, 선행연구 분석	■ 자료 비교·분석: 미국, 영국, WFME, 호주의 의과대학 설립인가 과정 및 의학교육 평가인증 절차와 기준 조사 및 비교 분석 ■ 문헌 연구: 국내 선행연구 내용 분석 및 함의점 도출
3. 의학교육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	■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학회 활동 의학교육전문가 인터뷰

연구내용	연구방법
	설문 분석: 설문지 제작 후 의학교육 관계자 대상 설문 실시 및 분석
4. 신설 의학교육기관 인증 기준과 규정 개발 및 타당화	- 신설 의학교육기관 인증 기준과 규정 개발 - 의학교육평가원 인증기준위원회와 인증제도위원회의 검토

제2장 국내·외 연구 현황

제1절 의학교육기관 설립 절차 및 관련 규정 분석

의학교육기관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학교(대학)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 설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학설립의 인가절차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대학설립과 관련된 법령에는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등이 있다.

1.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상위법으로, 대학설립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정관, 학교헌장, 학칙 등에 반영되어야 하는 주요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고등교육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제2조에 학교 설립 등에 관한 내용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등교육법(시행 2017.6.22.) 발췌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17.6.22.) 발췌

제2조(학교설립 등)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1.1.29., 2008.2.29., 2008.6.5., 2008.12.31., 2013.3.23.>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현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5.4., 2010.9.1., 2013.3.23.>

1.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④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2.31., 2013.2.15., 2013.3.23.>

1. 폐지사유
2. 폐지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4. 사립학교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재산의 처리방법

⑤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3.26., 2000.11.28., 2008.12.31., 2012.3.2.>

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2.31., 2013.3.23.>

1. 변경사유
2. 변경내용
3. 변경연월일

신설 의학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2항의 서류를 준비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인가 전 단계에서의 평가 또는 인증에 대한 사항은 현 법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설립과 운영상의 기준과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신설 의학교육기관 설립 주체가 공공 단체 외의 학교법인일 때 적용받는 법으로서 제8조 설립의 등기, 제10조 설립허가의 재단설립과 관련된 규정과 학교설립 시 갖추어야 할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3.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동법 시행 규칙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동법 시행 규칙」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설립 및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규이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는 제2조 설립인가기준등, 제3조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제4조 교사(校舍), 제5조 교지(校地), 제6조 교원, 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제8조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제10조 기준 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 등, 제11조 보고, 제12조 학교현장의 공표 등, 제13조 규제의 재검토를 명시되어 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과 기한, 인원 산정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의 신생 의대 중 일부 학교가 교육병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실한 의학 교육을 제공하였던 선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 중 제4조 교사(校舍) 2항은 2011년과 2013년에 개정되었으며,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대학설립 주체가 인가를 받기 위하여 교육부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서류들을 교육부장관에 제출하면, 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설립주체가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심의하며,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명시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시행 2017.4.11.) 발췌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①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4.3.5., 2008.2.29., 2008.9.23., 2009.4.21., 2013.3.23.>

1.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2. 제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기준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4.3.5., 2005.3.25., 2005.10.25., 2008.2.29., 2008.12.31., 2013.3.23.>

③설립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8.12.31., 2013.3.2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외에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교를 설립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4.3.5., 2011.2.16., 2013.3.23.>

⑤ 삭제 <2007.12.6.>

⑥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1., 2011.11.16., 2012.1.25.>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그 특별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설립주체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 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교육 또는 연구용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 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3. 설립주체가 제2호 각 목의 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임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구시설

을 두는 경우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계약학과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⑦제5조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3.25., 2009.4.21.>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⑧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 해당 대학이 확보한 전체 교사면적(부속시설의 교사면적은 제외한다)에서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을 뺀 면적[그 면적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4.21., 2012.1.25., 2016.5.3.>

1. 산업체등의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2. 산업체등이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⑨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의 그 계열별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4.21.>

.....(중략)

제3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08.9.23., 2009.4.21., 2011.2.16., 2013.3.23., 2017.4.11.>

1. 설립주체가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

2. 제2조의4 및 제2조의6에 따른 대학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인가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4.11.>

1.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5년(둘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한 경력이 5년(둘 이상의 재직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
 3.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산업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4.11.>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7.4.11.>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4.11.>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4.11.>
-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설립주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7.4.11.>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4.21., 2013.3.23., 2017.4.11.>
- ⑨ 위원회의 운영비와 현지조사경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2017.4.11.>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2.7.4.]

..... 중략

제10조(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①교육부장관은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대한 평가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원의 경우에는 4월 1일 현재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9.4.21., 2011.6.27.,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중 제4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부속병원의 기준 충족 여부 및 실습 의무 준수 여부 등에 관한 평가를 할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11.20.>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당해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한 학과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3.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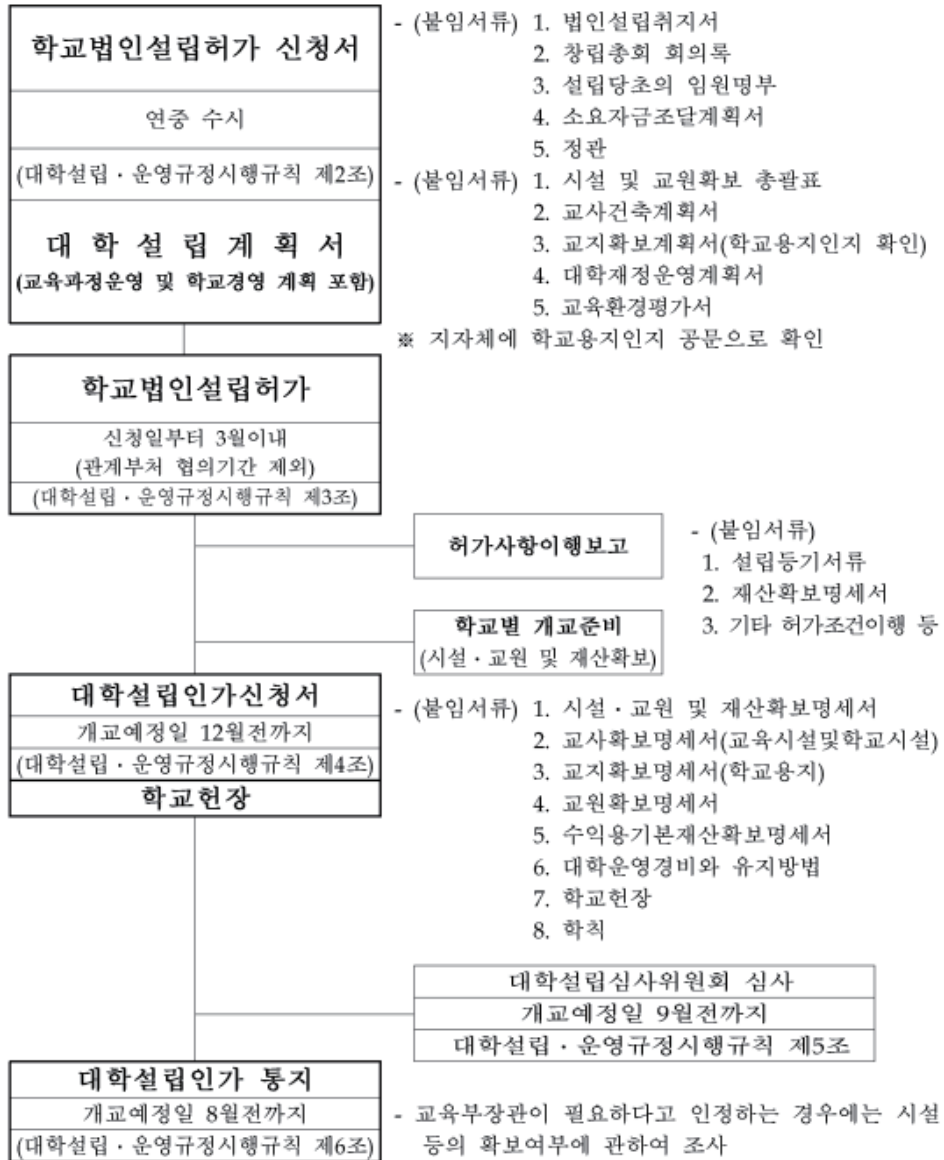
[제목개정 2013.11.20.]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설립 또는 변경 인가를 신청한 모든 대학의 인가를 심의하고 있으므로 신설 의학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의학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심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4. 대학설립 관련 규정 분석 결과

대학설립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신설 의학교육기관의 설립 인가절차는 설립주체가 교육부장관에 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 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를 내준다. 교육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교법인설립허가 및 대학설립인가 신청 요령]에 따르면 각 단계별 진행 절차와 제출서류는 <그림 2>와 같다.

학교법인 설립허가 및 대학설립인가 추진절차



[그림 2] 대학설립 인가 절차(교육부, 2018)

의학교육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강의 및 실습, 임상 실습으로 이루어지는 고유의 특성상 다양한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규정에는 실습병원의 확보에 대한 규정

만 존재하고 있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첫째, 대학설립 인가 신청 시 의학교육의 특수성(의예과/의학과 시기, 기초의학-임상의학 각각의 교원확보, 기초의학-임상의학 교육 및 실습, 실기교육센터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즉 의학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인적자원과 공간을 확보하였는지 확인할 근거가 없어 의학교육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공간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하지 않아도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가령 교원의 경우 설립인가 시 현 규정에 따르면 필요 교원의 1/2만 확보하여도 되므로 기초교원 확보 없이 임상교원만 확보하여도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대학설립 인가를 위한 제출서류가 교지, 교사, 교원 재정계획을 주로 강조하고 있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교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계획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는 학교 설립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므로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의학교육은 타 전공과 다르게 모든 학생이 함께 필수로 수강해야하는 과정들로 구성되며, 과정의 형태도 통합교육, 팀티칭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도 다수이므로 이에 합당한 계획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설립 인가 규정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대학설립 인가 심의과정에 의학교육전문가 또는 관련 기구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설립 인가 심의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1) 교육 및 연구 재직경력자, 2)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경력자, 3) 교육관련 단체 또는 산업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심의를 위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현재의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의학교육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설립주체가 제출한 인적, 물적자원의 확보가 적절한지,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의학교육기관 만을 위한 심의 별도의 심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설립심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의학교육전문가 또는 관련기구의 참여가 필요하다. 서남의대와 같은 부실대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립심사 단계부터 전문가 참여와 엄격한 심의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0조 1항에 교육부 장관은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교사 및 교원에 대한 평가, 부속병원의 기준충족 여부 및 실습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편제가 완성된 이후의 평가를 의미하므로 개교 전 단계에서는 평가할 수 없다. 또한 교사 및 실습병원 등의 시설과 교원에 대한 평가는 반영하고 있으나,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평가는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

1995년 이후 ‘대학설립준칙주의’로 교사(校舍), 교지(校地),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가지 최소요건만 갖추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누구나 대학을 설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3년에 교육부는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에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폐지하는 대신 [7],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대학의 재정운영계획, 학교헌장, 학사운영계획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학설립 단계부터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부실대학을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의학교육기관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설립 심사 시 더 세밀하고 더 엄격해야 할 것이다. 의학교육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각 분야의 충분한 교원확보, 실기교육 공간 및 임상실습 병원확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조직과 인력, 의예과-임상실습 전 교육-임상실습 교육의 유기적 연계와 같은 전문성과 특수성이 수반된다. 대학설립 단계부터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학교육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제2절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분석

1.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관련 법령

의학교육기관의 평가인증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의료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가. 의료법

「의료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의사가 되려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제5조 3항에서는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의료법(2017.06.21.) 발췌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2.2.1.>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

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2.1.>
[전문개정 2008.10.14.]

의료법에는 신설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별도의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인가 후 학생 입학 전에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거나 첫 입학생의 졸업 전에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법규 신설이 필요하다.

나.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의학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의거하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에 의하면,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의학교육기관의 경우 개교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의평원에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하므로 개교 전의 준비상황을 평가할 수 없어, 학생교육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개교를 하여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제2조의 2 ②항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2년의 범위에서 의평원이 인증여부를 결정도록 되어 있어 개교 이후에도 부실한 교육을 제공할 여지를 두고 있다. ⑤항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1년 이내에 평가인정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인증 불가시 해당 학교에 대한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2016.6.23.) 발췌

제2조의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 ①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라 한다)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정기관은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증의 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6.21.]

2.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의학교육 인증기관이다. 의평원은 2010년에 신설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절차 규정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신설 의학교육기관은 설립인가 이후 학생모집 전에 가인증(Preliminary Accreditation)을 받아야 하며, 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학생모집 광고 및 신입생 선발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가인증 획득 1년 후부터 매년 임시인증(Provisional Accreditation)을 받아야 하며, 이때 미비점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면 신입생 모집 중지하고, 재평가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인증을 취소당한 경우 재학생은 다른 대학으로 전학조치를 취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후 2주기 인증, Post 2주기 인증에 따른 평가인증 기준이 변경 되었으며, 2018년 2월 현재 의평원의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는 제5장 신설의대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의학교육인증단 규정(2018.02.05.) 발췌

제5장 신설대학 인증

제24조 (대상) 인증단은 신설 대학의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평가하고 인증한다.

제25조 (인증유형) 신설 대학의 인증유형은 예비인증(preliminary accreditation), 예비인증 불가(non-preliminary accreditation), 임시인증(provisional accreditation), 임시인증 불가(non-provisional accreditation)가 있다.

1. ‘예비인증’은 신설 대학이 ‘예비인증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예비인증 불가’는 신설 대학이 ‘예비인증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임시인증’은 기본의학교육을 시작한 신설 대학이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임시인증 불가’는 기본의학교육을 시작한 신설 대학이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26조 (신청) ① 신설 대학은 인가가 난 시점부터 기본의학교육과정의 학생을 모집하기 전까지 ‘예비인증을 위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방문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9., 2017.2.8.>

② ‘예비인증’을 받은 신설 대학은 기본의학교육과정의 학생을 모집한 후부터 첫 졸업생을 배출할 때까지 매년 ‘임시인증을 위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방문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8.>

제27조 (기간 및 절차) ① 예비인증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예비인증 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내에는 재평가인증을 받을 수 없다.

② 임시 인증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임시인증 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내에는 재평가인증을 받을 수 없다.

③ 예비인증 및 임시인증을 위한 제반 비용은 대학이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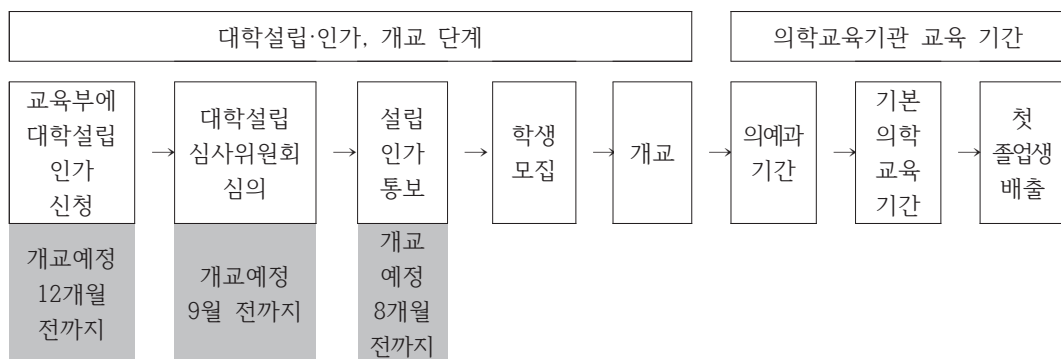
현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제5장 신설대학 인증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르면 기존의 가인증을 ‘예비인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증유형을 ‘예비인증’, ‘예비인증 불가’, ‘임시인증’, ‘임시인증 불가’로 구분하였다. 신설 의학교육기관은 설립인가 이후 학생모집 전까지 예비인증을 받아야 하며, 예비인증을 받은 신설 의학교육기관은 기본의학교육과정의 학생을 모집한 후부터 첫 졸업생을 배출할 때까지 매년 임시인증을 받아야 하며, 임시인증 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설립인가 이후 예비인증 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학생모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는 신설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의평원의 인증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규 마련과[8] 예비인증 불가를 받은 경우 학생모집 제한 등의 실제적인 제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신설대학 인증 제26조에 따르면 학생모집 후 첫 졸업생을 배출할 때까지 매년 임시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의료법」에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하거나, 입학 당시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 시 의사국가시험에 합격 후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입학 당시 인증을 받은 대학이어야 한다

면 ‘예비인증’을 받았거나, 첫 졸업생을 배출하기 전에 ‘평가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의평원 신설대학 인증 제26조에는 첫 졸업생 배출할 때까지 매년 ‘임시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임시인증’과 ‘평가인증’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는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러므로 관련 법규 또는 의평원의 신설대학 인증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의평원의 신설대학 인증규정이 실효성을 갖게 되더라도 신설 의학교육기관의 인증 준비 기간이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개교예정 8개월 전(예를 들어 3월 1일 개교일 경우 6월 30일까지) 설립주체에 인가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설립인가가 나면 7월 중에 학생모집 요강을 발표하여 9월 ~ 2월 중에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그림 3 참조>. 즉 인가통보를 받고 바로 학생모집 요강을 발표할 수 있으므로 신설 의학교육기관은 예비인증 이후 학생모집을 할 수 있도록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법규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3] 신설 의학교육기관 대학설립, 인가 및 교육 단계

제3절 외국의 신설 의학교육기관 인증 기준 및 규정 사례

1. 미국 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LCME)의 신설의대 의학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미국에서는 1942년에 설립된 민간자율기구인 LCME가 기존 의과대학 뿐 만 아니라 신설의대의 의학교육 프로그램을 평가인증하고 있다.[9]

의과대학을 신설하고자 하는 기관은 미리 LCME로부터 교육과정과 여건에 대한 평가인증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학생모집을 하고 있다. LCME는 신입생이 입학에서 졸업할 때까지 계획된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신설기관이 신속하게 자리를 잡도록 도움을 주는 동시에 부실교육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질 관리를 위해서 의대 설립 단계부터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새로 의학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에게 LCME의 평가인증은 필수 요건으로 신설의과대학의 평가인증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새로 의학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하는 기관에 대한 LCME의 평가인증은 <표 2>와 같이 5단계가 있다. 각 단계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 할 수 있다.[10]

<표 2> LCME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단계

신청자격 (Application status)
후보자격 (Candidate status)
예비인증 (Preliminary accreditation)
임시인증 (Provisional accreditation)
완전인증 (Accreditation as a complete medical education program)

가. 신청자격 (Application status)

새로 의학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LCME 의 평가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표2). 즉, 지역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내 있어야 하고, 소재지(State) degree-granting authority로부터 MD 학위수여기관으로 인가(grant)를 받고, 기관이 속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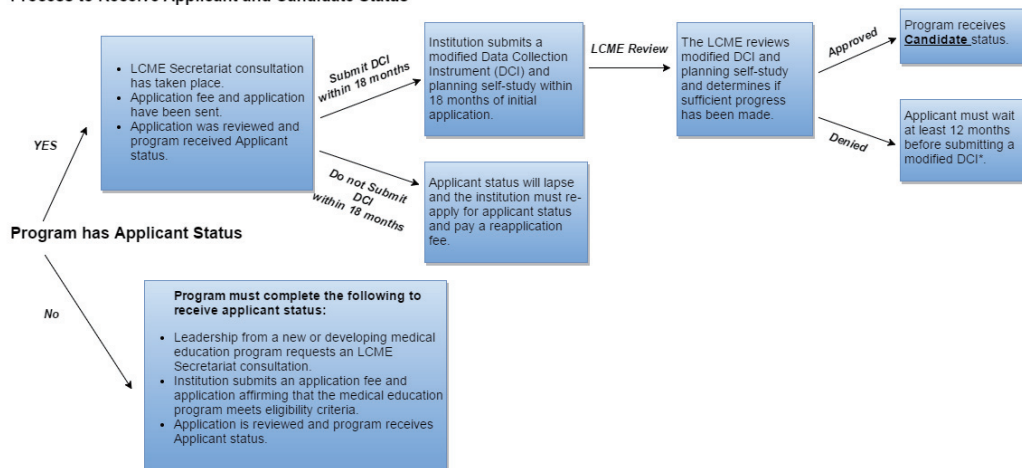
있는 모 대학(parent university)가 regional accrediting body의 인가(grant)를 받아야 한다.

<표 3> LCME 평가인증 신청자격(application status) 자격기준(eligibility criteria)

미국과 캐나다 내 종합대학 또는 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의학교육프로그램
교육기관 소재지(State) degree-granting 기관으로부터 MD 학위 수여기관으로 인가
regional accreditation body로부터 인가받은 모대학에 소속.

첫 단계로는 대학은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목적을 포함한 개발된 교육과정 자료를 평가인증비와 함께 LCME에 제출한다. LCME는 서류를 검토하여 자격기준(eligibility criteria)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되면 대학에게 평가인증을 신청(application)할 수 있는 후보(candidate) 자격을 부여한다. 신청자격(application status)을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LCME의 고유 권한으로 대학은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Process to Receive Applicant and Candidate Status



[그림 4] 신청자격 및 후보자격 인증 절차

나. 후보자격(Candidate status)

새로 시작하는 의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은 대학의 자체평가(self-study)와 LCME의 방문평가(on-site evaluation)로 이루어진다. 신청자격을 취득한 신설대학은 개발한 교육과정과 실행 계획을 포함하는 자체평가보고서를 예비인증 자체연구 지침서(guide to the

planning self-study for preliminary accreditation)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그리고 자료수집 정보시스템(Data Collection Instrument; DCI) 중 신설대학에 적용되는 평가인증기준에 대한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신설대학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LCME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학은 신청자격(applicant status)을 인정받은 후 18개월 이내 예비평가인증을 위한 자체평가보고서와 DCI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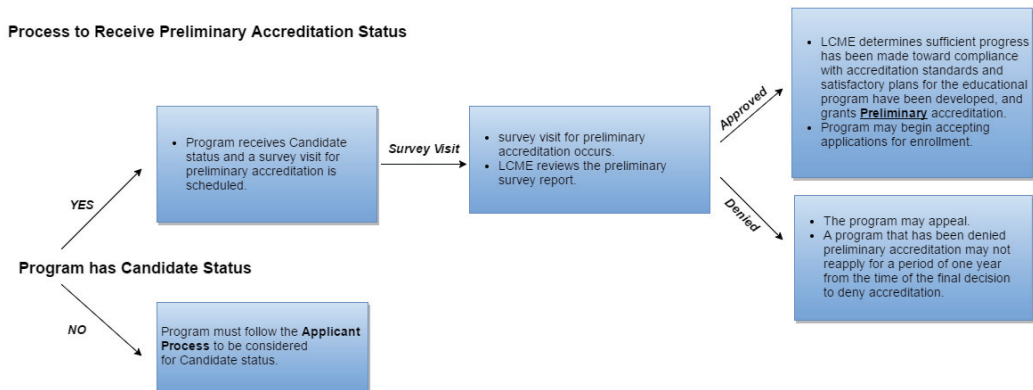
LCME는 정기회의에서 자체평가보고서와 DCI 자료를 검토해서 방문평가 시행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설대학에 따라서는 총 세 번의 자료검토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즉, 자료가 충분하여 첫 번째 검토에서 승인 받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불승인(denial)을 통보받은 날부터 12개월-18개월 사이에 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검토까지도 통과하지 못하면 신청자격(applicant status) 단계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자료검토 결과 승인이 되면 대학은 방문평가를 받을 수 있는 후보자격(candidate status)을 갖게 된다.

다. 예비인증(preliminary accreditation)

LCME의 방문평가가 결정되면 예비인증을 위한 방문평가 스케줄(Schedule for a Survey Visit for Preliminary Accreditation)에 따라서 신설대학에 대한 방문평가를 시행한다.[11] 방문 평가팀은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평가단의 보고서는 LCME 정기회의에서 기존 대학의 방문평가보고서와 같은 방식으로 검토되어 판정이 이루어진다.

신청대학의 교육과정과 여건이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LCME는 예비인증(preliminary accreditation)을 부여한다. 그러나 일부 충족되지 않은 기준이 있으나 학사 운영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대학에 대해서 개선보고서(status report)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신청대학은 LCME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예비인증(preliminary accreditation)을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을 최종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지나서 할 수 있다. 예비인증(Preliminary accreditation)을 받은 대학은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그림 5] 예비인증 절차

라. 임시인증 (provisional accredi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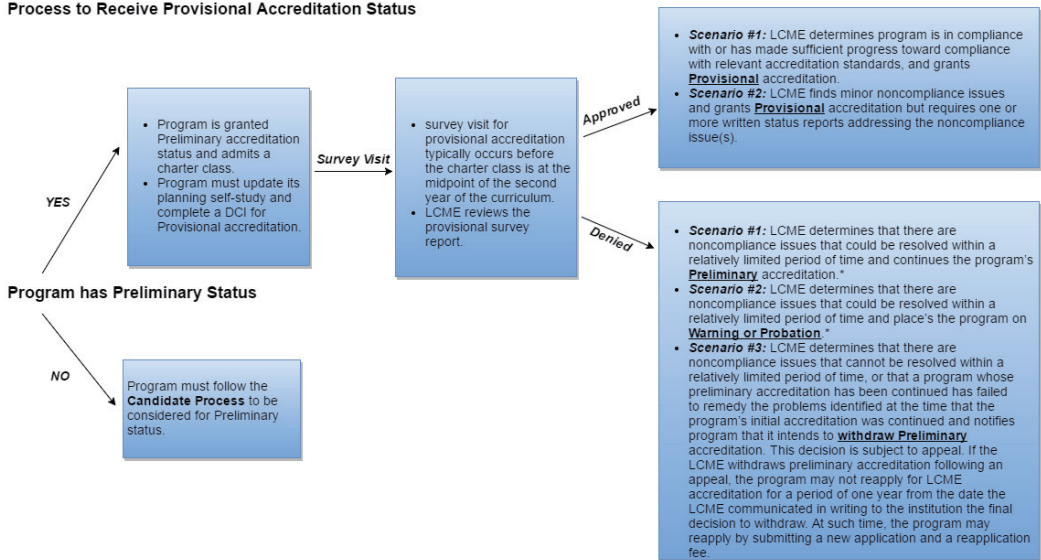
예비인증을 받은 후 신입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시작하여 신입생이 2학년이 되면 대학은 임시인증 평가(provisional accreditation survey)를 위한 자료를 DCI에 추가하고 자체 평가를 해야 한다. 이 시기의 방문평가의 목적은 애초에 계획했던 교육과정이 제대로 실행되었는가와 다음 단계의 교육과정 개발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LCME는 방문평가를 통해서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었고 다음 단계의 교육과정에 대한 준비가 적절하면 임시인증(provisional accreditation)으로 판정한다. 이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혹시 일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대학은 개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미충족 영역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대학은 다시 예비인증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 경우 대학은 학생 수 증원을 할 수 없으며,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재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대학이 경고(warning) 또는 유예(probation)를 받는 경우, LCME는 대학이 개선에 필요한 시간으로 최대 2년 정도를 고려하여 이 시간 내에 개선보고서 제출 또는 임시인증을 위한 재방문평가의 시기를 결정한다. 그러나 미충족 영역이 일정기간 안에 해결될 가능성이 없거나, 예비인증을 위한 평가에서 미충족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LCME는 대학의 예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대학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대학은 취소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 년 동안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

Process to Receive Provisional Accreditation Status



[그림 6] 임시인증 절차

마. 완전인증(accreditation as a complete medical education program)

임시인증을 받은 대학은 신입생이 4학년이 되는 시기에 자체평가보고서와 DCI의 모든 항목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인증 목적은 그동안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행되어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5년을 인증기간으로 인정한다. 일부 충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보고서를 대학은 제출해야 한다. 만약에 미충족부분이 개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되면 대학은 임시인증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이 경우 역시 대학은 학생 수 증원을 할 수 없으며, 신입생모집을 중지하고 재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미충족 영역이 일정기간 안에 해결될 가능성이 없거나, 임시인증을 위한 평가에서 미충족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LCME는 대학의 예비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대학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대학은 취소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 년 동안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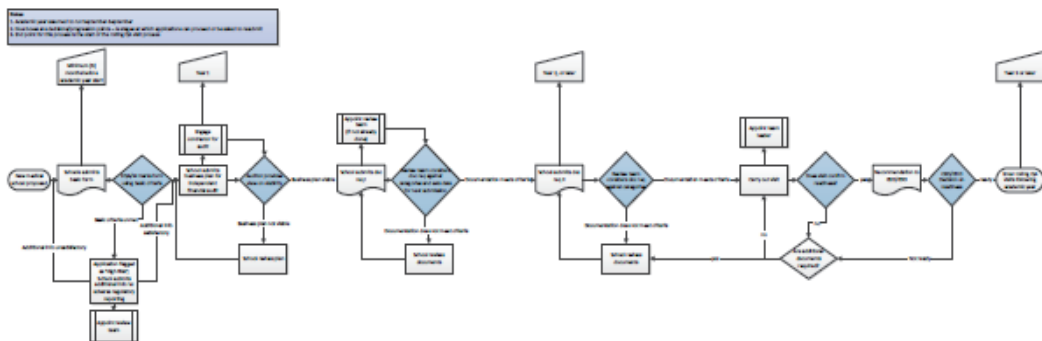
대학은 완전인증(accreditation as a complete medical education program)을 임시인증 받은 후 5년 이내 받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기존의 평가인증이 취소되고, 1년 후에 평가인증을 새로 신청해야 한다.

2. 영국 General Medical Council(GMC) 신설대학 평가인증

영국의 GMC는 의사면허 및 의과대학 인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기존에는 설립을 희망하는 기관이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GMC의 교육전문가인 리뷰어들이 검토한 후에 신청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이 적절성 여부를 결정한다.[12] 이후 신설대학은 질 관리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평가받기 위해서 첫 신입생이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Tomorrow's Doctors 기준에 의거하여 매년 평가인증을 받아 모두 통과하면 비로소 학위 수여 대학으로 GMC에 등록된다.[13]

최근에 신설 의과대학 설립신청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중에는 사업(business) 목적으로 신청하는 기관도 있고, 미흡한 교육과정과 평가제도 준비, 임상실습 병원부재 등의 문제를 현 제도로는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GMC는 2015년부터 신설의과대학 인정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개발하였다<표 4 참조>. 즉, 이전보다 평가영역 수가 증가되었다.

새로운 평가제도의 목적은 자료 검토와 방문평가를 통해서 설립기관이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여러 단계를 통해서 평가함으로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평가단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7] GMC 평가인증 과정(process diagram)

첫 단계는 스크리닝 단계로 GMC는 설립기관의 기존의 규제(regulatory)와 회계감사(audit) 자료와 더불어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두 번째 단계는 신설대학이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했다는 것에 대한 재정회계감사(financial audit)를 시행한다. 세 번째 단계는 신설대학이 GMC의 평가기준(Promoting

excellence: Standards for medical education and training, 2015)을 충족했는지에 대해 자료를 검토한 후, 필요하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다. 네 번째 단계는 신설대학을 방문하여 평가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신설대학이 의학교육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대학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면 학생을 모집할 수 있고, 첫 신입생이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매년 평가인증을 받아야 된다.

<표 4> GMC 신설대학 인증평가 영역

Table of areas to investigate

Area of to investigate	Evidence/requirement	Notes	Covered by:	Level of coverage in the existing form
Financial capacity: whether the institution is willing and able to provide the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Independent financial audit and assessment of the institution's finance and assessment of the business plan	This system has been used in Australia. It would be desirable to expect applicants to bear the cost of independent audits so that: - cost to the GMC is avoided - organisations demonstrate a financial commitment to the quality assurance process	Commissioned report from agreed contractor	None
Evidence of UK degree awarding powers	Organisation has the power to award a degree in the UK	This information is held by the QAA	Desktop research: QAA list	None (done informally)
QAA	Review of QAA activity in relation to the university including: - Reports of QAA activity - Organisation's response to QAA reports	This may not be applicable to some proposing institutions; however, as engagement is restricted to bodies with UK degree awarding powers, engagement with the QAA should be expected.	Desktop research: QAA reports	None
Academic criteria	Identify risks to academic quality at University; review research assessment exercise for identification of particular risks	Doctor as a scholar is a key requirement of TD09 and the school will need to have choices for elective units in line with TD09. This is a potentially risky area as we could be seen to be discounting applications from universities with a less 'academic' reputation; applications challenged or rejected on these grounds would be challenged as subjective or biased. As such, to use the category, there would need to be a clear definition about what evidence would be used and what would constitute poor performance in this area.	Higher education regulatory organisations	None

		This could include any either or a combination of: - A specified level of performance on research assessment exercises - The identification of specific concerns about academic standards by a clearly delineated range of organisations with a remit in this area.		
Track record of new programmes	- Questionnaire for School about recent attempts to set up programmes and the result - Engagement with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 bodies about proposed or started and completed/failed programmes at the university	The aim of this is to determine whether the organisation has successfully (or unsuccessfully) delivered new programmes to meet the standards of other professional bodies in the recent past. There are potential complications on this area as to what, if any action could be taken as a result.	Engagement with other professional bodies, possible via standard from Requested document	None
Evidence of demand for the school/need or requirement.	Analysis by school of the health economy of intended graduate employment destinations and evidence of support from local health organisations such as: - Confirmation of understanding from local health organisations likely to be affected by or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a new school - Analysis of local health economy in which graduates are expected to work demonstrating viability of producing more qualified graduates - Memorandum or other supporting documentation from local health organisations demonstrating need for/their support new medical school	The aim of this item would be to demonstrate commitment from local health economy to (and preferable need for) a new school. It is unlikely that we would be able to make evidence of local need within the local health economy a requirement of engagement; however, the Curriculum and Assessment Group (CAG) requires statements from employers to change specialty curricula is required. It would not be unreasonable to ask for evidence of engagement and support from local health organisations.	Local healthcare and healthcare education providers, Requested document	Limited (Q12) Q12 requires evidence of local engagement but does not explicitly state there is a need for local support.
Evidence of engagement with national bodies (HEFCE and Department of Health)	Evidence that key national organisations have been advised and advice sought. - Formal notification of intention to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EFCE - Feedback from organisations on proposal	The level of engagement with DH/HEFCE is likely to vary by organisation but this establishes minimum requirement to engage and gain feedback on application/information on how the intention to establish a new school will impact on funding.	Requested document	Limited (Q12) Q12 requires evidence of national engagement but does not set explicit requirements in this area
Quality management and governance statement	Statement outlining governance processes: - How the development of the course is monitored at governance level - Threshold at which contingency arrangements will be triggered Statement outlining: - Process for routine quality management arrangements of course covering areas listed in TD49 - How thresholds for identifying where quality improvement action is required	Then document should be scrutinis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clear system for the collection, analysis and scrutiny of quality data, and a threshold for a change to be required.	?	Significant (Q12) The requested information is not explicit about the requirements of TD49 but this can be inferred; it does not mention
Contingency arrangements	Evidence of a robust contingency arrangement in case of catastrophic course failure including: - An agreement with another organisation to take all students on the course if the course fails - Mapping of curricular outcomes of each stage of the course to equivalent curricular outcomes at contingency organisation including identification of any unmatched outcomes and commitment to ensure they are covered.		Requested document	Limited (Q12) Contingency is an informal requirement under the reviewer process.
Project planning	Project plan for the design and delivery of the course, specifically the items covered under TD49, namely: - Admission to medical school	The intention of this document would be to determine that there are time limited actions against development of the key components of the course.	Requested document	Significant (Q12, 31a-d, 40-44) Documents outlining

	- The learning experience (including induction, teaching, supervision, placements, curriculum) - Appraisal of, and feedback to, students - Pastoral and academic support for students - Assessment of students - Educational resources and capacity (including funding and facilities).			major resourcing and planning requirements are included but the need to project manage and identify, meet milestones in not made explicit
Academic faculty: demonstration of experience, expertise and appropriate allocation and staffing of roles	Documents to demonstrate there is a clear staffing plan covering a range of required roles and that the key staff have sufficient expertise/experience to deliver programme, suggested list of items includes: - School's staffing plan for academic faculty - Programme of staff training with project plan for delivery - Staff biographies demonstrating there is the expertise required to establish the programme.	It may be desirable to set more prescriptive requirements on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required by a new school. Bios to demonstrate there is sufficient experience in: - Designing new programmes - Managing medical courses - Understanding of GMC requirements	Requested document	Limited (Q12, 38, 42-44) Document s outlining the size and range of faculty are required but there is no expectation about the level of expertise and experience required.
Clinical faculty	Documents describing involvement of clinical staff in the design, development and delivery of the programme including - Description of roles identified as required within the clinical faculty - Biographies of staff filling key roles demonstrating appropriate expertise - Evidence of engagement in the development of the programme (eg through curriculum or quality management development process)	Assessment of whether suitable staffing is in place is likely to be difficult to determine but will require the school and clinical staff to demonstrate that individuals appointed to key faculty roles are aware of the requirements of the programme and are engaged in its development.	Requested document	Significant (Q12, 42) Requirement to develop clinical faculty is explicit but engagement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new school and the requirement for expertise is not explicit.
Curriculum and assessment system	A fully planned out curriculum and set of assessments for each year of the course, supported by a clear overarching philosophy.	It may be desirable to set prescriptive requirements around the timescales for developing assessment tools and items.	Requested document	Full

Selection process	A clear statement of the selection processes supported by: - A rationale for the use of selection tools which references the curriculum philosophy - A clear statement of how the selection process will be standard set detailing the minimum thresholds for an offer - A project plan for delivery of the first round of recruitment		Requested document	Limited (Q27) This item is listed generically but the more detailed assurance about the selection requirements and processes would be beneficial given recent experience.
Agreements for placements	Agreements ensuring that clinical placements are in place and that there is a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clinical placement capacity as required: - Service level agreements specifying the contribution of each local education provider (LEP) to the delivery of the course, completed and signed prior to recruitment - Strategy and project plan for the engagement and recruitment of new LEPs to support expansion of student numbers where planned - Documentary evidence that due diligence in relation to new LEPs has been carried out	It may be desirable to require applicants to submit a project plan for the engagement and recruitment of new LEPs	Requested document	Significant (7, 39) The issues are covered well but there is no requirement that this must be in place to proceed; rather the form relies on the school stating how this will happen than producing a formal agreement as a condition of acceptance.

*QAA(Quality Assurance Agency for higher Education)

3. 호주 Australian Medical Council Limited(AMC) 신설의대 평가

호주정부는 1985년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과대학 평가인정에 관한 자문단체인 호주의학협회(Australian Medical Council, AMC)를 설립하고 협회 내 평가인정위원회가 호주 및 뉴질랜드 의과대학의 의학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있다.[14]

호주에서는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은 최소한 설립 전 24개월까지는 AMC에 설립 의사(Notice of Intent)를 전달한 후에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가. 첫 번째 단계 (Stage 1)

설립기관은 먼저 지역(state) 또는 국가(national) 주무기관(authority)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의학교육 시작 15-18개월 전까지 AMC 지침(guide)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평가비와 함께 AMC에 제출한다.

AMC는 설립기관의 의과대학 인정평가위원회(Medical School Accreditation Committee)는 제출 자료를 4개월 이내 검토하여 AMC 책임자(director)에게 평가인증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세 가지 유형으로 판정한다. 설립기관의 평가준비가 되어 있다면 평가팀에 의한 평가를 위한 교육과정을 제출하게하고, 준비가 불충분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거부(reject) 한다.

나. 두 번째 단계 (Stage 2)

첫 단계를 통과한 설립기관은 교육시작 6개월 전까지 평가가 받아야 한다. 설립기관은 평가를 위해서 ① 4년 전체 교육과정(full program), ② 첫 2년 동안의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평가 계획, ③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수, 재정, 시설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④ 설립기관의 장단점을 포함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또한 설립기관은 4년 전체 교육과정을 일괄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단계적인 교육과정을 제시할 수 있다. 단계적 제시를 하는 경우 매 단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4.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의 신설대학 가이드

세계의학교육연합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는 의학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1972년에 설립된 세계보건기구(WHO) 협력 비정부 단체이다.

WFME는 수준이 낮은 의과대학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7개의 가이드 기준(표 5)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이 현실적으로 계획한 교육을 이행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7개의 신설대학 가이드 기준은 필수적이며, 일정수준 이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15]

<표 5> WFME 신설대학 가이드 기준

Criterion 1. Establishing the need
Criterion 2. Programme outline
Criterion 3. Clinical facilities
Criterion 4. Economic resources and business plan
Criterion 5. Physical facilities
Criterion 6. Academic and clinical staff
Criterion 7. Student numbers and support

5. 외국 사례의 시사점

외국사례에서는 대학을 신설하고자 하는 기관은 설립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평가기관의 평가인증을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학생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여건을 평가인증 대학을 설립할 때부터 평가하는 질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첫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 매년 평가인증을 받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설립인가를 받으면 학생모집을 할 수 있고,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평가인증은 의학교육을 시작한지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진 상태가 아니더라도 학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허점이 있다.

외국사례에서는 신설대학에 대한 평가인증 신청 시기를 최소 2년 정도로 여유있게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예정개교시한 12개월 전까지 교육부에 인가신청을 하면, 대학설립심사는 9월 전까지, 인가여부는 8월 전까지 대학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 사례에 비해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므로 인가심사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을 때 대학이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 본심사와 보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한 융통성이 있는 시간표를 제시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대학 설립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제4절 선행 연구

1997년 김영삼 정부 이후 20여 년 동안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이 없었으므로, 신설의대 평가인증과 관련된 문헌들은 많지 않았다. 이에 1990년대의 신생대학에 대한 연구와 의과대학 신설,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에 관련된 최근 연구들을 찾아 분석하였다.

1. 1990년대 신생 의과대학 관련 연구

- 김용일(2002), 신생 의과대학의 교육계획 발전을 위한 촉진인자 및 저해인자 분석[4]

2002년 현재, 10년 이내에 새로 설립된 의과대학의 교육관련 단점(취약점)을 1) 조직부문, 2) 학생부문, 3) 교수부문, 4) 시설부문, 5) 교육계획(software)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1) 조직부문에서는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으로 설립되었는지에 따라 조직부문의 개발이 어려우며, 의료원장-학장 체계는 사립의대에서만 존재하였고 총장-학장 간 위계질서가 뚜렷하였으며, 병원수입에 대학이 의존할 경우 학장의 리더십 발휘가 어려움. 짧은 전통으로 동창회 등 학외지원기반이 약하고 사회책임성 경험축적이 어려움.

2) 학생부문에서는 학생 정원수가 적어서 등록금이 주요 재원인 사립대의 경우 경상비 투자에 대한 재정적 압박, 신생 의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서 입학 당시 학생의 자질이 기설 의대와 차이가 존재함.

3) 교수부문에서는 전임교수 특히 기초의학 교수의 부족이 심각(의학과 설립 시 교원에 기초의학/임상의학 모두 의학과 교수이므로 계열과 관계없이 교수인원만 충족하면 되므로), 교수직에 대한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비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음.

4) 시설부문에서는 대부분 선인가, 후시설 형식으로 신설되어 기초의학 교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였고, 교육병원이 제때 마련되지 못함.

5) 교육계획부문에서는 교육지원/개발 전담부서가 없고, 교육투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대학본부 보직교수나 사무직에 위임되고 있으며, 젊은 교수들은 연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학생교육 수준을 대학원/전공의 수준에 맞추는 경향, 의사국시를 의식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음.

위와 같은 저해요소가 있지만, 학생 수가 적으므로 소단위 교육이 가능하며, 젊은 교수가 많아 개혁의지가 강하고, 새로운 교육계획을 기획하는데 장애 요인이 많지 않다는 측

진인자도 가지고 있음.

- **안덕선(2013), 의사인력공급의 적정화와 부실의대 문제[6]**

과거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급증하는 의료수요의 감당과 부족한 의사인력 공급을 위하여 무분별한 의과대학 양산정책을 감행하였으며, 특히 선 인가-후 시설로 인한 부실한 의학교육의 후유증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의과대학 설립의 절차는 먼저 설립의향서를 의학교육평가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평가인증 전문기구에서 의과대학 설립 준비 여부를 점검함. 이때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타당성과 설립주체에 대한 점검과 계획을 심사하고, 준비된 설립주체에게 일단 설립 허가를 내주어 학생을 모집할 만반의 준비가 되었을 때 신입생 모집 허가를 내어주면 그때 비로소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음. 신입생 모집 후 신입생이 본과 1학년부터 4학년을 마칠 때까지 매년 새로운 학년에 대한 교육계획서를 제출받아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4년간 지속적으로 평가함. 1년의 기간으로 매해 임시인증을 실시하여 교육이 완전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의과대학의 역량을 개발하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설 대학의 평가인증 기준 없이 학생부터 모집하고, 의과대학 착공에 들어간 비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과대학이 신설대학 기준에 의한 심사와 지속적인 평가인증제도에서 정밀하고 전문적인 평가에 임하였다면, 오늘날의 부실의대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 입학정원과 의학교육의 질 모두 보전복지부와 교과부의 정부부처가 관여해야할 사안이지만, 전문인력이 아닌 공무원조직이 이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전문 공공기구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여 정부도 아니며 그렇다고 순수 민간 임의단체도 아니며 사회와 정부의 가교역할과 실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중개적 역할(mediating agency)을 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공공기구를 설립·운영이 필요함.

2. 신설 의학교육기관 설립 및 평가인증과 관련된 연구

- **이무상(2009), 의대 신설 논리와 인증평가 제도-지방의대 신설의 문제[5]**

일제로부터 광복된 후 반세기 동안 의과대학 수는 5개교에서 41개교로 8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구성장이나 경제발전과는 별개로 정치적 논리가 작용되었음. 인구대비 의대 수도 많지만, 1985년 이후 신설 의대들은 학교 및 학생의 규모가 소규모이어서 비용대비

효율적이지 못하고, 의학교육의 질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지역균등 배려를 위해 지방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내주어도 사립 의대의 경우 대학소속 병원들을 수도권에 두고 있는 비율이 높으므로 지역사회 의료 논리는 더 이상 의대 신설의 논리가 될 수 없음.

지방의대 신설 주장이 대학이나 병원의 명성제고와 명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평가 제도가 연구되고 논의되고 있음. 1998년부터 의학교육계와 공학 교육계가 중심이 되어서 민간자율로 시작하고 진행하여 왔던 ‘학문분야별 교육에 관한 인증평가’ (전문평가)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학문평가만큼은 법에 의하여 민간자율 기구에 위임하는 작업이 진행 중임. 선진국에서는 ‘선인가-후시설, 후능력’으로 학교설립을 인가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인증 혹은 예비인증”이라 부르는 인증평가가 있으며, 미국의 민간자율 의학교육 인증평가 전문기구인 LCME는 5단계의 인증단계를 두고 3단계를 통과하면 학교광고를 할 수 있고, 4단계를 지다면 학생모집을 할 수 있으며, 개교 후 졸업생이 나올 때까지 매년 임시 인증평가를 받게 되며, 졸업생이 나오면 정규인증을 받게 됨.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법령에 의하여 곧 실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김홍식(2015), 의과대학을 추가로 설립할 수 없는 이유[16]

1980년 이후 단기간 양적팽창으로 인해 22개의 의과대학이 설립되면서 실설 의과대학에서 교수와 실습병원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그 결과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를 거부하거나 인증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실교육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기존 의과대학조차 의학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힘든 상황임.

의대신설을 주장하는 대학이나 단체들은 우리나라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의사 증가율은 가속화되고, 국토면적을 고려한 의사밀도는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음. 이 세 가지 사항을 감안하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향후 의사 수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실정임.

의사수와 국민건강 수준에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의사 과다 배출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가됨.

위와 같은 사유로 의과대학 추가 설립보다는 의학교육의 내실에 최우선을 고려해야 하며 오히려 기존 의과대학조차 통·폐합을 통해 교육과 수련에 내실을 도모해야할 상황임. 또한 의사인력은 교육의 시작과 노동시장의 진입 시점 간 시차가 10년 이상으로, 현

재 의사인력의 부족을 근거로 의대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안덕선(2015), 의과대학 평가인증의 현황과 개선방향[17]**

우리나라에서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자발적인 발전은 70~90년대 우후죽순으로 생긴 신설의대들의 부실한 의학교육에 대한 질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음. 선 분양, 후 시공방식과 같이 의과대학이 설립되어 미흡한 상태에서 이미 설립된 의과대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평가인증을 시작하게 되었음.

우리나라에서 평가인증이 도입된 것은 이미 41개 의과대학이 설립된 후여서 실제로 중요한 신설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은 할 수 없었음. 의과대학과 그 부속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며, 의학교육의 설립과 운영은 일반 대학의 설립과는 교육적 시각이 매우 달라야 함.

의과대학 평가인증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평가기구와 정부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 그리고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주체와 대학병원의 운영주체 모두 통합적으로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조하여야 하며, 자격이 불충분하고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본래의 사명을 다하게 하거나 퇴출시킬 수 있어야 함. 정부기관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위한 재정확보가 중요하며, 국제적 수준의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평가인증의 국제성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서경화(2016), 의사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해외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고찰[3]**

의사인력 수급정책의 근거는 의사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 추계결과에 기반을 두고 정책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의과대학 신설을 통해 의사인력 수급 조절이 합리적인 정책인지 충분한 합의가 필요함.

과거 의과대학 신설은 역대 정권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 정치적 산물로 인식되고 있음. 의과대학 신설문제는 의학교육의 중요성이나 질 높은 의사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목표로 고려되어야 함. 의학교육은 특성상 다양한 시설과 인력의 충원이 요구되며,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의과대학 신설 인가를 할 경우 부설의대는 급속히 증가, 그 피해와 악영향은 학생과 사회의 몫이 됨

미국은 신규 의학프로그램 또는 의과대학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미국의학교육인증평가위원회(LCME)의 인증평가 과정을 거쳐야 함. 인증평가과정은 인증평가 신청과 대기단계를 포함 총 5단계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별 평가결과 승인되어야 다음 평가단계 진행됨. 자체평가와 평가팀의 현장평가 후 LCME에서 보고서와 관련 서류 검토 후 예비인증/임시인증/완전전인증이 결정되며, 인증평가를 통해 예비인증을 받기 전까지 신규 의과대학에서는 학교 광고 또는 학생모집을 할 수 없음.

영국의 경우 영국의학협회(GMC)는 신규 의과대학 및 의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학교육 및 수련에 대한 기준을 따르고 있음. 신규 의과대학 설립 추진 조직은 GMC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학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질관리프레임워크(QAF)를 제공하며 QAF는 방문평가, 승인,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GMC에서 의학교육에 대한 질 보증을 해주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제시하고 있음.

미국과 영국의 모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데 있어 인증평가 기구가 관여하고 있음. 미국과 영국은 신규로 의과대학을 설립하거나 의학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할 경우 인증평가 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설립 계획안을 마련하고 인증평가기구의 평가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으며, 인증평가 결과에 따라 신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시점이 결정됨.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서 먼저 인가해주고 이후에 한국 의학교육인증평가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의학교육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전이 존재하지 않음.

제3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선에 대한 요구분석 및 의견수렴

신설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과 규정 개발을 위하여 다음의 두 단계로 의학교육 전문가 및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요구분석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학교육전문가 5명을 포커스 그룹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사전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여 한국의학교육 학술대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1. 의학교육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가. 조사방법 및 도구

본 연구에서는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학교육전문가 5명을 대상 포커스 그룹으로 선정하였다.

포커스 그룹으로 선정된 5명의 의학교육전문가에게는 연구팀이 개발한 질문지와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여 미리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 5월 2일(수)에 의학교육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내용,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의학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전에 배포한 질문지는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의 목적, 인증기준, 평가인증 시작시기, 의예과 평가기간 포함여부, 연구팀에서 개발한 평가인증 기준안의 적절성, 현재 신설대학 인증규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였다.

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의학교육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은 총 5명이었으나, 1명은 불참하여 추후에

구두로 의견을 받았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신설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1) 평가인증 내용 및 방법, 2) 평가인증 적용 시작 시기, 3) 평가인증 기간에 의예과 시기 포함 여부, 4) 단계별 인증기준 적용 및 연구팀 평가기준 안 검토, 5) 현행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규정 검토로 구분하였으며, 각 항목별 구체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의 내용과 방법

-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대학 설립 시 갖추어야 하는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여부도 포함해야함.
- 또한 기존 의학교육 평가인증이 교육 프로그램 여부와 시행 실적을 동시에 평가하는데 반해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은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지를 우선 평가하고 차후에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매해 평가인증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연구팀 개발 안과 같이 신설 의학교육기관에 ASK2019 인증기준을 시기에 따라 적용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재의 평가 가이드를 신설 의학교육기관에 맞추어 수정해야 함.

2)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적용 시작 시기

- 현재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설립 주체가 교육부에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대학설립심 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 후 인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설립인가 단계부터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부실 의학교육기관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학교육기관 인가를 심의할 때에는 대학설립심의 위원회에 의평원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한다면 인가 단계부터 개입이 가능함.
- 관련 법규 검토 결과 신설 의학교육기관 인증은 대학설립인가 이후, 의평원의 예비인증을 받아야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규/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임. 미국의 신설 의학교육기관 인증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예비인증에서 불인증을 받았을 때 학생모집 중지, 모집정원 감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예비인증을 받아야 학생모집을 할 수 있도록 법규/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함.
- 현재 고등교육법을 유지하면서 부실 대학 설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인가 이후

예비인증을 받은 이후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규정 수정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교육부의 대학설립인가 담당 부서와 대학평가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설득이 필요함.

3)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에 의예과 시기 포함 여부

- 의과대학으로 신설될 경우 의예과 시기를 평가인증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 ASK2019 기준과 같이 기본의학교육과정만을 평가대상 기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ASK2019 기준에 의예과 기간에 대한 별도의 평가인증 기준이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기준을 개발해야하는 어려움도 있음.
- 그러나 학생 모집 전 예비인증 이후부터 기본의학교육과정 평가인증까지의 공백이 생기며, 의학교육 프로그램은 의예과와 의학과를 모두 포함하므로 의예과 기간도 평가대상 기간으로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의학교육 프로그램에 의예과와 의학과가 모두 포함되므로 오히려 ASK2019 인증기준에 의예과 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의예과와 의학과 구분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관련 연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4) 신설 의학교육기관에 단계별 인증기준 적용 및 연구팀 기준안 검토

- 신설 의학교육기관은 매해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며 되며, 적용 기준은 연구팀이 제시한 ASK2019 바탕으로 1단계를 개교전(설립인가 이후 학생 모집 전, 예비인증), 2단계를 기본의학 전(예과 2학년), 3단계를 임상실습 전(본과 2학년), 4단계를 졸업 시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의견이 모아짐.
- 신설 의학교육기관은 1단계인 예비인증 이후 매년 임시인증을 받아야 하며, 1단계 인증은 인적·물적 재원 확보와 의학교육 프로그램의 계획이 평가의 내용이었다면, 개교 후에는 계획의 이행 정도와 차기 단계의 계획을 함께 평가하여야 함.
- 다만 신설 의학교육기관의 경우 예비인증 시 기초/임상 교원과 부속병원 확보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개교 이후에는 계획 이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시 정량적인 수치를 평가 가이드에 제시하여야 할 것임. 특히 교원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기초-임상교원의 적절한 수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평가 가이드

드에 명시해주어야 함.

5) 현행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검토

- 현행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규정은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중 ‘제5장 신설대학 인증’ 으로 제24조~제27조로 명문화 되어 있음. 그러나 예비인증 불가의 경우 1년 이내에 재평가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한 절차나 사후에 대한 조치(예: 학생모집 정지 등)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또한 현재 신설대학 인증 규정에는 예비인증과 임시인증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임시인증의 경우 법규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증/조건부인증/인증유예/불인증과는 다른 형태이므로 임시인증 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의 효력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즉 ‘임시인증 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불인증’의 개념과 다르므로 매해 인증평가를 받아야하는 것 외에는 입학생 의사국시 응시 금지 등의 법규 적용이 어려움.
- 기존의 ‘임시인증’을 ‘조건부인증’으로 수정한다면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예비인증 이후 매해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과 시행령 적용이 가능할 것임.
- 예비인증 이후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유형을 조건부인증/인증유예/불인증으로 수정하여 규정 보완이 필요함. 이렇게 규정을 보완할 경우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고 준비과정이 미진할 경우 ‘불인증’을 부여하면 이후에는 교육부에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
- 신설 의학교육기관과 관련한 의평원 자체 규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별도의 규정을 갖는 것이 선언적, 명시적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임.
-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판정 주체와 방법도 미리 규정으로 정해놓아야 함.

2.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선 의견조사

의학교육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과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모두 동의하였다.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학교육전문가뿐 아니라 의학교육관계자들도 동의하는지 의견을 조사하여 연구결과 초안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의학교육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또한 설문을 통해 의예과 시기의 평가인증 기간 포함 여부, 평가인증 시작 시기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 내용에 대해서는 의학교육관계자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설문의 방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방법 및 도구

의학교육관계자 설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학교육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연구팀에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설문지는 제 34차 의학교육학술대회 기간(2018.05.31.-06.02.) 동안 학회 참석자 전원에게 배부하였으며, 총 69부의 설문지가 취합되었다.

나. 설문 결과

설문 응답자는 총 69명이었으며, 응답자의 소속을 중복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2개 기관 이상 소속 그룹 19명의 의견도 참조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리하였다. 중복응답을 포함한 응답자 소속으로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67명, 66.3%), 한국의학교육학회(14명 13.9%),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7명, 6.9%), 한국의학교육평가원(10명 9.9%), 의료정책연구소(1명 1.0%), 의학교육관련 컨소시엄(2명, 2.0%)이었다.

응답자 직급 중 교수직이 총 57명(82.6%)으로 가장 많았고, 전공별 세분화하면 기초의학계열 23.2%, 임상의학계열 43.5%, 인문사회계열 8.7%, 기타 1.4%, 무응답 5.8%로 나타났다. 교수 외의 직급으로는 의과대학/의전원 교직원(조교포함) 8명(11.6%), 의학교육 관련 학회/협회/기관 직원 1명(1.4%), 의학교육 학위과정생 2명(4.3%) 이었다. 각 설문문항별 응답 결과는 부록 6과 같으며, 결과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행 의학교육기관 설립 단계에서의 평가인증 필요성

- 설문 문항 1,2,3은 현행 대학설립단계 과정에 대한 내용임. 현행 법령에는 의학교

육기관 설립인가는 교육부에서 구성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설문결과 의학교육기관 설립 시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필요하거나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 의학교육 관련 기구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견(88.4%)이 다수였음.

- 대부분의 응답자(97.1%)가 평가인증을 통과해야 학생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은 대학설립 인가 전(58.0%) 또는 인가 후 학생 모집 전(39.1%)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2) ‘예비인증’에 대한 의견

- 현행 의평원 인증규정에는 신설대학은 설립인가 통보 후 학생모집 전까지 예비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본의학교육 시작 이후 첫 졸업생 배출시까지 매해 임시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응답자 대부분(97.1%)이 설립인가 이후 학생 모집 전에 ‘예비인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예비인증 불인증’을 받은 경우 학생모집 불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92.8%가 응답하였음. 기타의견으로 학생모집 불가 조치보다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3) ‘임시인증’에 대한 의견

- 신설 의학교육기관 ‘임시인증’ 기간에 의예과 기간 포함 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의예과 시기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66.7%)이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33.3%)보다 많았음. 기타의견으로 기존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의예과 과정을 포함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임시인증’의 적절한 시기로는 현행 규정과 같이 매년 평가인증 받아야 한다는 의견 52.2%, 교육과정 시행시기에 따라 평가인증 받아야 한다는 의견 46.4%였으며, 기타의견으로 교육과정 종료시점 이후에 평가인증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임시인증 불인증’을 받았을 경우 신설 의학교육기관에 필요한 조치(중복응답 가능)에는 신입생 모집 중지(59.4%), 신입생 정원 감축(15.8%), 재학생을 타 학교로 전학(22.8%)로 응답하였으며, 기타 6개월 내 재인증, 재학생의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 박탈 의견이 있었음.

4)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단계 및 적용 기준

- 현 규정의 ‘예비인증’ 과 ‘임시인증’ 을 보다 세분화하여 ① 학생모집 전(예비인증), ② 기본의학과정 시작 전(임시인증), ③ 임상실습 시작 전(임시인증), ④ 졸업시험점(정규인증)의 4단계로 구분하여 인증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89.9%)였으며, 특정 단계를 줄여서 3단계 인증이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신설 의학교육 평가인증 시 적용할 인증 기준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34.8%)과 현행 평가인증을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해야한다는 의견(30.4%), 현행 평가인증 기준과 새로운 인증기준을 병용해야한다는 의견(33.3%)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음.

5)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발 관련 자유의견

-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자유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학설립 인가 전에 평가인증이 필요하다는 의견, 기준 미달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 관련 부처(교육부, 복지부 등)와의 협의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자리잡도록 단계별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
- 한편 신설 의학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운영 노하우나 제반 환경이 미흡할 수 있으니 이를 극복할 재평가 기회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며, 의평원이 규제기관이 아닌 평가 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본 연구에서는 의학교육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와 의학교육관계자 대상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제 2절의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에 적용할 기준안과 규정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제2절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선방안

1.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안

연구진은 외국의 신설 의학교육 인증 기준과 선행연구 분석 결과, 의학교육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의학교육관계자 대상 설문결과를 종합하여 신설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의 방향과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의 목적은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의학교육기관으로서 적절한 시설과 제도 및 교육환경을 갖추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여 신설 의학교육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은 의학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대학 의학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계획과 확보 여부도 포함하며, 기본 의학교육 시작 준비 시점부터 매해 인증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의학교육 평가인증이 교육프로그램 유무와 시행실적을 동시에 평가하지만,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은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우선 평가하고 개교 이후에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인증 기준은 신설 의학교육기관 상황에 적절하도록 새로운 인증기준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2019학년도부터 도입되는 ASK2019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새로운 인증기준과 ASK2019 기준을 혼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ASK2019 기준이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WFME) 국제적 기준을 담고 있으며, 신설 의학교육기관도 궁극적으로는 ASK2019 기준을 달성해야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구진은 ASK2019 기준의 기본기준을 신설 의학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내용에 따라 단계별 적용을 제안하는 바이다. 다만 의예과 시기의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포함 여부는 전체 의학교육프로그램 체계와 함께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연구진은 <표 6>과 같이 신설 의학교육기관의 설립 및 교육과정 시행 시기에 따라 1단계를 개교 전(설립인가 이후 학생 모집 전, ‘예비인증’), 2단계를 개교 후, 3단계를 임상실습 시작 전, 4단계를 첫 졸업생 배출 직전 단계로 구분하였다. 2-4단계에 적용되는 기준은 ‘임시인증’에 해당하는 인증기준이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인증기준은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6〉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적용 단계 및 시기

인증기준 적용 단계	적용시기	평가인증 유형	비고
1단계	학생모집 전	예비인증	불인증 시 학생모집 불가
2단계	개교 이후	임시인증 (매해 인증)	불인증 시 신입생 모집 중지
3단계	임상실습 시작 전		
4단계	첫 입학생 졸업 직전		

한편 ASK2019 기준은 크게 시설, 인력, 프로그램, 규정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시행실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구분된다.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은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각 단계에서 교육시설, 인적자원, 행정체계, 교육과정 및 교육관련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체제를 갖추 수 있도록 계획에 대한 평가 후에 그 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ASK2019 기본기준 중 제도 또는 시설, 교육환경, 교육과정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은 처음 적용되는 단계에서는 〈표 7〉 각 기준 중 붉은색으로 계획의 준비여부만 평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단계에 ‘◎’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면 ‘[1-1-1] 의과대학은 대학의 사명을 정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보건의료분야의 관계자들이 인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준은 1단계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학생모집 전 ‘예비인증’의 기준이다. 그러나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학생을 모집하기 전이므로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사명을 정하는 것은 학생모집 전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1-1-1] 대학의 사명이 있다.’로 사명의 유무로만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2단계 이후에는 원래 기준인 [1-1-1]가 ‘임시인증’에 적용된다.

연구진은 연구 초기에 ASK2019 기본기준을 바탕으로 1~4단계 적용 인증기준을 개발하였으나, 의학교육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일부 기준을 수정하였다. 이후 의학교육인증단 제5장 신설대학 인증 규정 개정안의 타당화를 위하여 인증제도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받아 규정 수정 중 관련 인증기준도 함께 수정하였다. 수정된 인증기준은 연구진 중 의평원 인증기준위원회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최종 기준안의 타당화 과정을 진행하였다.

<표 7> 신설 의학교육 평가인증 단계별 인증기준 안

구분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예비 인증	임시인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생 모집 전	개교 후	임시 인증 시작 전	졸업 직전	
1 사 명 과 성 과	1	1	의과대학은 대학의 사명을 정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보건의료분야의 관계자들이 인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1-1. 대학의 사명이 있다.(1단계)	◎	○	○	○	
		2	의과대학의 사명에는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다양한 의학 분야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 그리고 졸업 후 교육과 평생 학습하는 의사양성을 위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	○	○	○	
		3	의과대학은 사명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	○	○	○	
	2	1	의과대학은 자율성이 보장되고, 교수와 교직원이 교육과정의 설계와 실행, 그에 필요한 자원 활용 등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	○	○	○	
		3	1	의과대학은 사명에 근거하여 졸업성과를 규정하고 있다.	○	○	○	○
			2	의과대학은 학생이 동료 학생, 교수진, 보건의료 인력, 환자와 보호자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	○	○
	3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	○	○	○	
	4	1	의과대학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학의 사명과 졸업성과의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1-1. 주요 이해관계자가 대학의 사명과 졸업성과의 수립에 참여하고 있다.(1단계)	◎	○	○	○	
2 교 육 과 정	1	1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에 근거한 전체 교육과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	○	○	○	
		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2-1.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있다.(1단계)	◎	○	○	○	
		3	의과대학은 평등 원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3-1. 평등원칙에 따른 교육과정이 있다.(1단계)	◎	○	○	○	

구분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예비 인증	임시인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생 모집 전	개교 후	임상실습 시작 전	졸업 직전	
2 교 육 과 정	1	1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분석과 비판적 사고를 포함하는 과학적 방법의 원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 분석과 비판적 사고를 포함하는 과학적 방법의 원칙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다.(1단계)	◎	○	○	○	
		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의학연구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1. 의학연구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다.(1단계)	◎	○	○	○	
		3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근거중심의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1. 근거중심의학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다.(1단계)	◎	○	○	○	
	3	1	의과대학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 이해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 개념과 원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3단계) 1-1. 의과대학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 이해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 개념과 원리를 학습할 수 있는 기초의학 교육과정이 있다.(2단계)		◎	○	○	
		2	의과대학은 기초의학에서 학습한 지식, 개념 및 원리가 임상의학의 학습에 연계될 수 있도록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1. 기초의학에서 학습한 지식, 개념 및 원리가 임상의학의 학습에 연계될 수 있는 기초의학 교육과정이 있다.(2단계)		◎	○	○	
	4	1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1-1.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이 있다.(1단계)	◎	○	○	○	
	5	1	의과대학은 졸업 후 진료가 가능하도록 임상학과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1. 졸업 후 진료가 가능한 임상학과 임상실습 교육과정이 있다.(3단계)			◎	○	
		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에 임상실습 전 준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2-1. 임상실습 전 준비교육이 있다.(2단계)		◎	○	○	

구분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예비 인증	임시인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생 모집 전	개교 후	임상실습 시작 전	졸업 직전	
2 교 육 과 정	3	3	의과대학은 적절한 임상실습 교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3-1. 적절한 임상실습 교육기간이 있다.(3단계)			◎	○	
		4	의과대학은 환자안전을 강조한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4-1. 환자안전을 강조한 임상실습 교육과정이 있다.(3단계)			◎	○	
	6	1	의과대학은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 간에 적절한 조화를 이룬 교육과정이 있다.		○	○	○	
		2	의과대학은 관련 학문, 학과, 과정이 수평 통합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1. 수평 통합된 교육과정이 있다.(2단계)		◎	○	○	
	7	1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교육과정위원회는 의도한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1-1. 교육과정위원회가 있고, 교육과정위원회는 의도한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1단계)	◎	○	○	○	
		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위원회에 교직원과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고 있다.	○	○	○	○	
	8	1	의과대학 교육은 졸업 후 교육을 감안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	○	○	○	
3 학 생 평 가	1	1	의과대학은 학생평가의 원칙,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	○	
		2	의과대학은 학생평가에 지식, 술기, 태도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2-1. 학생평가는 지식, 술기, 태도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2단계)		◎	○	○	
		3	의과대학은 다양한 평가방법과 형식을 사용하여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3-1. 학생평가의 방법과 형식이 다양하다.(2단계)		◎	○	○	

구분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예비 인증	임시인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생 모집 전	개교 후	입학생 시작 전	졸업 직전	
	4	4	의과대학은 학생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1. 학생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2단계)		◎	○	○	
		2	1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와 교육방법에 적합하게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1-1. 의도한 교육성과와 교육방법에 적합한 학생평가가 있다. (2단계)		◎	○	○
			2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2-1. 의도한 교육성과에 도달하기 위한 학생평가가 있다.(2단계)		◎	○	○
			3	의과대학은 학생의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3-1. 학생의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생평가가 있다.(2단계)		◎	○	○
			4	의과대학은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균형있게 실시하고 있다. 4-1. 형성평가와 총괄평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2단계)		◎	○	○
4 학 생	1	1	의과대학은 객관적인 원칙에 근거한 입학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1-1. 객관적인 원칙에 근거한 입학정책이 있다.(1단계)	◎	○	○	○	
		2	1	의과대학은 특별전형 모집요강에 입학정원과 선발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	○	○	○
		3	1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학업상담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고 있다. 1-1. 학업상담 제도가 있다.(1단계)	◎	○	○	○
			2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1.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1단계)	◎	○	○	○

구분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예비 인증	임시인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생 모집 전	개교 후	임상실습 시작 전	졸업 직전	
4 학 생	3	3	의과대학은 학생의 사회적, 재정적, 개인적 요구를 다루는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3-1. 사회적, 재정적, 개인적 요구를 다루는 학생지원 프로그램이 있다.(1단계)	◎	○	○	○	
		4	의과대학은 학생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	○	○	○	
		5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주거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기숙사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5-1. 학생전용 기숙사가 있다.(1단계)	◎	○	○	○	
		6	의과대학은 학생상담과 지원에 관련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	○	○	
	4	1	의과대학은 사명, 교육과정 설계, 관리, 평가와 그 외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학생대표의 적절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	○	○	○	
		2	의과대학은 학생활동과 학생의 자치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	○	○	
5 교 수	1	1	의과대학은 세계의학교육연합회가 권고하는 기초의학 분야별로 적절한 수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다. 1-1. 기초의학 분야별로 교수를 확보하고 있다.(1단계)	◎	○	○	○	
		2	의과대학은 의학교육 담당기구가 있고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수가 있다.	○	○	○	○	
		3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분야에 전임 교수 또는 전담 교수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다. 1-1. 의료인문학 교수를 확보하고 있다.(1단계)	◎	○	○	○	
		4	의과대학은 각 임상의학 전공과목별로 적절한 수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있다. 4-1. 임상의학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있다.(1단계)	◎	○	○	○	
		5	의과대학은 교수를 채용할 때 연구, 교육, 임상분야 업적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	○	○	○	
		6	의과대학은 기초의학, 의학교육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 교수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채용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	○	○	

구분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예비 인증	임시인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생 모집 전	개교 후	임상실 시작 전	졸업 직전	
5 교 수	2	1	의과대학은 교수가 교육, 연구, 봉사활동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1-1. 교육, 연구, 봉사활동 간의 균형을 이루는 교수 개발 정책이 있다.(1단계)	◎	○	○	○	
		2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1. 교수업적평가 제도가 있다.(1단계)	◎	○	○	○	
		3	의과대학은 신입교수를 위한 의학교육 연수과정에 신입교수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	○	○	○	
		4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학생교육이나 학술활동 이외의 학회활동이나 공공 목적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4-1. 학생교육이나 학술활동 이외의 학회활동이나 공공 목적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교수업적 평가기준이 있다.(1단계)	◎	○	○	○	
		5	의과대학은 교수 모두가 전체 교육과정을 숙지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이와 관련된 교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5-1. 교수 모두가 전체 교육과정을 숙지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1단계)	◎	○	○	○	
		6	의과대학은 교육을 위한 연수와 교수개발에 교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6-1. 교육을 위한 연수와 교수개발에 교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1단계)	◎	○	○	○	
6 교 육 자 원	1	1	의과대학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 기본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	○	○	○	
		2	의과대학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 지원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	○	○	○	
		3	의과대학은 학생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	○	○	○	

구분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예비 인증	임시인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생 모집 전	개교 후	임상실 시작 전	졸업 직전	
		4	의과대학은 학생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있고 그에 대해 적절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	○	○	○	
		5	의과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대비 학생교육 관련 직접비용이 적절하다.	○	○	○	○	
		6	의과대학은 개인 교수실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고, 적절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	○	○	○	
		7	의과대학은 교수들의 연구를 위한 적절한 공간과 시설 설비를 갖추고 있다.	○	○	○	○	
		8	의과대학은 교직원, 학생, 환자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	○	○	○	
6 교 육 자 원	2	1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의 환자와 충분한 수의 환자를 확보하고 있다.		○	○	○	
		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상실습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	○	○	
		3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진료행위에 대한 관리체계가 있다.		○	○	○	
	3	1	의과대학은 교육활동에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구성원이 전자교육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	○	○	
	4	1	의과대학은 의학연구역량을 개발하는 정책이 있다.	○	○	○	○	
		2	의과대학은 연구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1. 연구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다. (1단계)	◎	○	○	○	
		3	의과대학은 학생의 연구시설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	○	○	

구분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예비 인증	임시인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생 모집 전	개교 후	입학생 시작 전	졸업 직전	
6 교육 자 원	5	1	의과대학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	○	○	○	
		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 개발, 교수법과 평가방법 개발에 대한 교육 전문성 활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2-1. 교육 전문성 활용을 위한 정책이 있다.(1단계)	◎	○	○	○	
	6	1	의과대학은 교직원과 학생이 국내외의 교육 기관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다. 1-1. 교직원과 학생이 국내외의 교육 기관과 교류를 위한 지원정책이 있다.(1단계)	◎	○	○	○	
7 교육 평 가	1	1	의과대학은 교육의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	○	
		2	의과대학은 교육평가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1. 교육평가체제가 있다.(2단계)		◎	○	○	
		3	의과대학은 교육평가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	○	
	2	1	의과대학은 교육자와 학생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다.			○	○	
	3	1	의과대학은 학생과 졸업생 코호트에서 사명, 의도한 교육성과, 교육과정, 투입한 자원에 관련된 수행능력을 분석하고 있다.				○	
	4	1	의과대학은 교육 모니터링과 교육평가 활동에 주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다.			○	○	
8 대 학 운 영	1	1	의과대학은 교육, 교수, 학생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직자가 임명되어 있다.	○	○	○	○	
		2	의과대학은 학장과 보직자가 직무관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와 실적이 있다. 2-1. 학장과 보직자가 직무 관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가 있다.(1단계)	◎	○	○	○	

구분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예비 인증	임시인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생 모집 전	개교 후	입학생 사작 전	졸업 직전	
체 계 와 행 정		3	의과대학은 대학운영을 위한 적절한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를 갖추고 있다.	○	○	○	○	
		4	의과대학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교육병원마다 학생교육과 연구를 총괄하는 보직자가 있고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	○	
	2	1	의과대학은 교육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학장과 보직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	○	○	○	
	3	1	의과대학은 교육예산을 포함한 교육관련 재정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	○	○	○	
		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교육적 요구에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	○	○	○	
	4	1	의과대학은 행정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적정 수의 행정업무 담당직원을 확보하고 있다.	○	○	○	○	
	5	1	의과대학은 보건의료분야 및 보건의료 관련분야와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	○	○	○	
	9 지 속 적 개 선	0	1	의과대학은 대학 발전계획이 있고, 대학 발전기금을 운용하며, 동문 또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
2			의과대학은 지속적인 질 관리와 개선을 위해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를 갖추고 있고,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	
3			의과대학은 평가인증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 실적이 있다.				○	

2.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안

가.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유형

1) ‘예비인증’ : 학생모집 전

영국은 별도의 설립 인가 과정 없이 GMC에서 설립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의 준비상태를 평가한 후에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로부터, 호주는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인증평가 내용은 신설 의학교육기관의 의학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계획과 계획의 구체적 이행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에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일정 조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2013년에 교육부가 대학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대학의 재정운영계획, 학교현장, 학사운영 계획에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러한 심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 그룹 인터뷰 및 의학교육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부실 대학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인가 전에 평가인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대학 설립인가 전 단계부터 의학교육평가인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진은 호주 사례와 같이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예비인증을 위한 평가인증’을 적용하되, ‘예비인증’을 받은 후에만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1990년대 후반에 개교한 의과대학들이 선인가-후 시설로 인가를 받았음에도 교수 및 교육병원 확보하지 못하여 부실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던 선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설립 인가 이후 평가인증 절차 없이 학생을 모집하고 교육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학생이 고스란히 받을 것이 자명하며, 부실한 교육을 받은 의료인의 양산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은 이미 서남의대 사례로 경험하였다. 설립 인가 이후 학생을 모집하기 전에 평가인증을 통해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6년 또는 4년간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는 확인이 있을 때에서야 학생을 모집하고 의학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ASK2019 인증 기준 준 1. 사명과 성과 전 기준, 2. 교육과정 중 전체 교육과정 체계 관련 기준, 4. 학생 중 학생

지원체계 관련 기준, 5. 교수 전 기준, 6. 교육자원 중 임상실습 관련 제외한 전 기준, 8. 대학운영체계와행정 중 교육병원 관련 제외한 전 기준을 포함한다.

2) ‘임시인증’ : 개교 이후 매해

‘예비인증’을 받은 신설 의학교육기관은 개교 후부터 매해 ‘임시인증’을 받아야 한다. ‘임시인증’의 목적은 ‘예비인증’에서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제시한 교육시설 및 환경, 6년 또는 4년 전체 교육프로그램의 계획을 적절한 시점에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여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유지하는데 있다.

‘임시인증’은 매해 실시하지만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교육과정 내용과 시행시기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개교 후에는 <표 6>의 2단계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교육환경, 교육과정 계획의 실행정도를 평가하며, 다음 해에 교육과정 계획의 시행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다. 동일하게 임상실습과정이 시작하기 전에는 3단계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임상실습을 위한 교육병원과 병원 내에서의 학생공간 확보, 임상실습과정 시행을 위한 준비도를 평가하며, 임상실습이 시작한 후에는 임상실습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신설 의학교육기관은 개교 후부터 첫 입학생의 졸업 직전년도까지 2~4단계의 인증기준으로 ‘임시인증’을 받아야 한다. ‘임시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신설 의학교육기관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재학생의 교육개선에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임시인증’을 통해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일정수준의 의학교육의 질을 확보하였다면,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해에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게 된다.

나. 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중 신설대학 인증 규정 개선안

현행 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중 신설 의학교육기관에 관한 규정은 제5장 제24조 - 제27조이다. 연구진은 신설대학 인증 규정 개정초안을 의학교육평가원 인증제도 위원회에 검토 의뢰하여 인증제도위원회 각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신설대학 규정 개정초안에서 현행 ‘신설대학’ 용어를 ‘신설 의학교육기관’으로 수정을 제시였으나,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조 정관에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으로 명시되어 있어 ‘신설 의학교육기관’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학

교육평가원 인증제도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받아들였다.

현행 신설대학 인증 규정 중 연구진이 개정안에 제시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제24조 ~ 제26조에 명시된 ‘신설 대학’을 ‘신설대학’으로 수정
- 2) 제24조(대상)의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기본의학교육과정’으로 수정
- 3) 25조(인증유형)의 ‘예비인증’, ‘예비인증 불가’, ‘임시인증’, ‘임시인증 불가’에 대한 설명에 인증과 불가에 대한 내용이 대구를 이루도록 내용을 수정
- 4) 26조(신청) ①항에 ‘예비인증’을 받아야만 학생모집을 할 수 있다는 내용 추가
②항에 ‘임시인증’ 신청시점을 ‘개교 후’로 하여 ‘임시인증’의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며, 종료시점을 ‘평가인증’ 전까지로 하여 ‘임시인증’과 ‘평가인증’ 사이의 공백이 없게 함.
③항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해에 정규인증에 해당하는 ‘평가인증’을 받아야 함을 명시
- 5) 27조(기간 및 절차) ①항에 ‘임시인증 불가’를 받으면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재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추가
②항에 예비인증과 임시인증에서 ‘불가’를 받은 경우를 함께 명시하여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명확히 함.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제시하는 신설대학 인증 규정 개정안을 현행 규정과 비교하여 <표 8>로 제시하였다.

〈표 8〉 신설대학 인증 규정 현행-개정안 비교표

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24조 (대상)	인증단은 <u>신설 대학의 의학에</u> <u>해당하는 교육과정과</u> 교육환경을 평가하고 인증한다.	인증단은 <u>신설대학의</u> <u>기본의학교육과정과</u> 교육환경을 평가하고 인증한다.	
제25조 (인증유형)	<u>신설 대학</u>의 인증유형은 예비인증(preliminary accreditation), 예비인증 불가(non-preliminary accreditation), 임시인증(provisional accreditation), 임시인증 불가 (non-provisional accreditation)가 있다. 1. ‘예비인증’은 <u>신설</u> <u>대학</u>이 ‘예비인증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예비인증 불가’는 <u>신설</u> <u>대학</u>이 ‘예비인증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임시인증’은 <u>기본의학교육을 시작한 신설</u> <u>대학</u>이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임시인증 불가’는 <u>기본의학교육을 시작한 신설</u> <u>대학</u>이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u>신설대학</u>의 인증유형은 예비인증(preliminary accreditation), 예비인증 불가(non-preliminary accreditation), 임시인증(provisional accreditation), 임시인증 불가 (non-provisional accreditation)가 있다. 1. ‘예비인증’은 <u>신설대학</u>이 ‘예비인증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예비인증 불가’는 <u>신설대학</u>이 ‘예비인증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임시인증’은 <u>신설대학</u>이 ‘임시인증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임시인증 불가’는 <u>신설대학</u>이 ‘임시인증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예비인증 평가기준’ 은 앞에 제 시한 1단계 기준을, ‘임시인증 평가기준’ 은 2~4단계 평가인증 기 준을 의미
제26조 (신청)	① 신설 대학은 인가가 난 시점부터 <u>기본의학교육과정의</u> <u>학생을 모집하기 전까지</u> <u>‘예비인증을 위한</u> <u>평가인증’을 신청하고</u> <u>방문평가를 받아야 한다.</u>	① 신설대학은 인가가 난 시점부터 <u>‘예비인증을 위한</u> <u>평가인증’을 의학교육평가원에</u> <u>신청하고 인증단의 방문평가를</u> <u>받아 ‘예비인증’을 받은</u> <u>경우에 한하여 학생 모집을 할</u> <u>수 있다.</u>	③ 신설

규정	현행	개정안	비고
	② ‘예비인증’을 받은 <u>신설 대학은 기본의학교육과정의 학생을 모집한 후부터 첫 졸업생을 배출할 때까지 매년 ‘임시인증을 위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방문평가를 받아야 한다.</u>	② ‘예비인증’을 받은 <u>신설대학은 개교 후부터 ‘평가인증’ 전까지 매년 ‘임시인증을 위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방문평가를 받아야 한다.</u> ③ <u>첫 졸업생을 배출한 해에는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u>	
제27조 (기간 및 절차)	① <u>예비인증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예비인증 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내에는 재평가인증을 받을 수 없다.</u> ② <u>임시 인증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임시인증 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내에는 재평가인증을 받을 수 없다.</u> ③ 예비인증 및 임시인증을 위한 제반 비용은 <u>대학이</u> 부담한다.	① <u>‘임시인증 불가’를 받은 경우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재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u> ② <u>‘예비인증 불가’ 또는 ‘임시인증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후 재신청할 수 있다.</u> ③ 예비인증 및 임시인증을 위한 제반 비용은 <u>신설대학이</u> 부담한다.	

제4장 연구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이번 연구는 신설 의학교육기관의 질 보장 및 질 관리를 위하여, 현행 의학교육기관 설립과정과 규정, 외국의 신설 의학교육기관 인증절차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과 규정을 수립하여 정책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진은 대학설립 절차와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관련 규정, 외국의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절차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의학교육 전문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에 적용할 기준과 규정을 개발하여 제안하였기에 연구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가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충분히 준비한 다음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예비인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기초자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인가 이후부터 첫 졸업생을 배출할 때까지 단계적, 지속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음으로써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신속히 자리매김하고 기설 의학교육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설 의학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의학교육기관의 설립 단계부터 부실 교육을 방지하는 질 관리를 함으로서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의학교육 수준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서남의대 폐교로 의대 입학정원의 향방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나, 의학교육기관 개교 전 준비사항, 개교 후 계획의 이행정도를 확인하는 평가인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과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에 대한 연구 결과는 치의학, 간호학 등 보건의료계열 인증기관의 신설 대학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발 시 좋은 모델이 되어 타 학문분야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신설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과 적용시기에 의예과 시기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 몇 차례 논의하였다. 그러나 의예과/의학과(본과)의 구분 또는 6학년 체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한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현재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기본의학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

의학교육과정을 의예과 시기에 시작하는 경우 평가인증에 의예과 시기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소수의 의견들을 고려하여 평가인증 내용과 시기에 대한 후속 연구의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5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1. 대학설립 및 평가인증 관련 법규 개정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일정수준의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여건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 한 뒤 학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본방법이자 국민의 건강을 관리할 의료인 양성의 첫걸음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설립 인가 이후부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의평원의 ‘신설대학 인증 규정’은 의평원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교육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의 학생모집은 불가하다는 의학교육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대학설립 및 평가인증 관련 법규 개정의 제안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의학교육평가원 신설대학¹⁾ 평가인증을 통한 학습권 보호

현행 신설대학에 대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은 Post 2주기 기준 중 6. 졸업 후 교육영역을 제외한 94개 기본기준을 3단계(개교 전/강의수업 전/임상실습 전)로 구분되어 있다. 2019년도부터 평가인증이 ASK2019 기준으로 변경되므로, 신설대학 평가인증 기준도 동일하게 ASK2019 기준으로 변경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진은 신설대학 평가인증 기준으로 ASK2019 기본기준에 바탕을 둔 4단계(인가 후 학생모집 전/ 개교 후/임상실습 전/첫 졸업생 졸업직전) 인증기준을 개발하였으며, 각 기준이 적용되는 첫 단계에는 계획의 준비도만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이 제시한 인증기준은 의평원 신설대학 평가인증기준으로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3. 의학교육평가원 신설대학 평가인증 규정 개정

의학교육평가인증단 규정에는 제5장 신설대학 인증은 제24조 - 제27조에 해당한다. 본

1) 본 연구에서는 ‘신설 의학교육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는 ‘신설대학 인증’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의평원 규정 언급 시에는 ‘신설대학’으로 표기하였음.

연구에서 제시한 신설대학 평가인증 규정은 기존 규정의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예비 인증’을 받아야 학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임시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 중지라는 제한사항을 명시하였다. 신설대학 평가인증 규정 개발안에 대한 타당화 작업을 위해 인증제도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일부 규정안을 수정하였기에 의평원 내에서 회의를 통해 정식 규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참고문헌

- [1] 손지영, 「한국, 고령화사회서 17년 만에 고령사회 진입」, 매일경제, 2018.08.28., A1면
- [2] 2017 미리보는 비용추계(2017), 국회 예산정책처
- [3] 서경화(2017), 의사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해외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고찰, 의료정책포럼 14(4), 92-101.
- [4] 김용일(2002) 신생의과대학의 교육계획 발전을 위한 촉진인자 및 저해인자 분석, 한국의학교육, 14(2) 227-243
- [5] 이무상(2009), 의대 신설 논리와 인증평가 제도-지방의대 신설의 문제, 의료정책포럼 7(1), 84-97.
- [6] 안덕선(2013), 의사인력공급의 적정화와 부실의대 문제, 의료정책포럼 11(1), 25-30
- [7]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2013), 교육부
- [8] 박은수(2011), 의과대학 인증평가 법제화, 왜 필요한가?, 의료정책포럼, 9(2), 67-70.
- [9] www.lcme.org, Guide to the Planning Self-study for Preliminary Accreditation
- [10] www.lcme.org, Rules of Procedure
- [11] www.lcme.org, Schedule for a Survey Visit for Preliminary Accreditation
- [12] GMC(2015) Promoting excellence: standards for medical education and training available at www.gmc-uk.org/education/standards.asp.
- [13] General Medical Council (2009) Tomorrow's Doctors available at: www.gmc-uk.org/tomorrowsdoctors (accessed 15 January 2015)
- [14] www.amc.org.au/files/d0ffcecd9608cf49c66c93a79a4ad549638bea0_original.pdf
- [15] WFME Criteria for establishment of a new medical school: Guidance for goverments, regulators and universities. available at <http://wfme.org/publications/new-medical-school/?wpdmdl=825>
- [16] 김홍식(2015), 의과대학을 추가로 설립할 수 없는 이유, 의료정책포럼, 12(3), 65-72
- [17] 안덕선(2015), 의과대학 평가인증의 현황과 개선방향, 의료정책포럼 13(2), 38-44

부 록

[부록 1]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 2017.4.11.] [대통령령 제27980호, 2017.4.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①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4.3.5., 2008.2.29., 2008.9.23., 2009.4.21., 2013.3.23.>

1.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2. 제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기준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4.3.5., 2005.3.25., 2005.10.25., 2008.2.29., 2008.12.31., 2013.3.23.>

③설립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8.12.31., 2013.3.2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외에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교를 설립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4.3.5., 2011.2.16., 2013.3.23.>

⑤ 삭제 <2007.12.6.>

⑥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1., 2011.11.16., 2012.1.25.>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그 특별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설립주체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교육 또는 연구용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3. 설립주체가 제2호 각 목의 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임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구시설을 두는 경우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계약학과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⑦제5조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3.25., 2009.4.21.>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⑧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 해당 대학이 확보한 전체 교사면적(부속시설의 교사면적은 제외한다)에서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을 뺀 면적[그 면적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4.21., 2012.1.25., 2016.5.3.>

1. 산업체등의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2. 산업체등이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⑨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의 그 계열별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4.21.>

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①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제2항에 따른 협동과정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제1항에 따른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연·산(學·研·産), 학·연(學·研) 또는 학·산(學·産)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학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대학(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4.21., 2012.2.2., 2013.3.23.>

1. 인문·사회 계열: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4편 이상일 것

1의2. 예·체능 계열: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일 것

2.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6편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07.12.6.]

[중전 제2조의2는 제2조의4로 이동 <2007.12.6.>]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별표 1의3에 따른 통·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2.26., 2012.2.2., 2013.2.15., 2013.3.23.>

1. 통·폐합 후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한다) 및 교원(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확보율은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등 및 교원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2. 제1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② 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 2013.3.23.>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교육부장관의 출연을 받는 사업으로 선정될 것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학자를 유치하고 별표 1의5를 충족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한다. <개정 2013.2.15.>

④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09.4.21., 2011.2.16., 2013.2.15.>

⑤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전년도 총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4.21.>

1.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

2.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를 초과하나 자체조정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⑥ 대학(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교원확보율이 65퍼센트 미만인 대학은 제외한다)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별표 1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의 상호 조정(이하 "상호조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6., 2013.2.15.>

1. 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대학원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2.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 ⑦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가 해기사(海技士)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제6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 수의 8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 중 교원의 확보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 [본조신설 2007.12.6.]
- [중전 제2조의3은 제2조의5로 이동 <2007.12.8.>]

제2조의4(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두 대학을 통·폐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산업대학은 25퍼센트 이상, 전문대학은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각각 감축하는 경우 교원 및 교사등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12.6., 2010.2.26., 2012.2.2.>

1. 통·폐합 후 교사등이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산업대학의 교사등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의 합과 같거나 증가할 것
2. 통·폐합 후 교사등의 확보율이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의 확보율보다 증가할 것
3. 교원확보율이 61퍼센트 이상일 것(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5.10.25.]

[제2조의2에서 이동 <2007.12.6.>]

제2조의5(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학생 정원이 100명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명으로 본다.

1. 학생 정원의 2배의 학생수를 25로 나눈 수의 교원. 이 경우 교원의 확보는 제2조제1항제2호를 따르도록 하되, 교원의 3분의 1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겸임교원과 동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2.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교사. 이 경우 주간 및 야간 등 2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사의 면적은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과정의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②대학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원을 그 대학의 관련되는 학과 또는 학부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이 담당하는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과목은 그 전문대학원에 개설된 전체 교과목의 4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1.>

③대학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제2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이 기재된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설치계획서를 당해연도 6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대학원대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주체는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5조제1항 전단에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건축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외에 추가로 1년분 임차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설립주체는 임차한 시설에 대하여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의 등기를 완료한 후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한 설립주체는 그 교육시설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09.4.21.>

[본조신설 2006.6.7.]

[제2조의3에서 이동 <2007.12.6.>]

제2조의6(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40조의2에 따라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4.21.>

1. 설립 당시 교원의 확보율이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100분의 61 이상일 것

2.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1천분의 556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을 산정할 때에는 1996년 7월 26일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인 설립·운영하는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4.21.>

[본조신설 2008.9.23.]

제2조의7(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① 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사 및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4조제6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교지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2.24.>

1. 교사: 별표 3에 따른 계열별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변경하려는 위치에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

2. 교지: 제1호에 따른 교사의 건축면적 이상

[본조신설 2011.2.16.]

제2조의8(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폐지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 중인 대학이 같은 영 제30조의2에 따른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이 조에서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통합과정의 정원 중 학사학위과정에 해당하는 학생정원에 대해서는 제2조의3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2.15.]

제3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08.9.23., 2009.4.21., 2011.2.16., 2013.3.23., 2017.4.11.>

1. 설립주체가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
 2. 제2조의4 및 제2조의6에 따른 대학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가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4.11.>
1.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5년(둘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할 경력이 5년(둘 이상의 재직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
 3.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산업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4.11.>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7.4.11.>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4.11.>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4.11.>
-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설립주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7.4.11.>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4.21., 2013.3.23., 2017.4.11.>
- ⑨ 위원회의 운영비와 현지조사경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2017.4.11.>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2.7.4.]

제4조(교사) ①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3.11.20.>

1. 교육기본시설: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추어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추어 것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현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것.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 나. 치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치과의사전문회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 다. 한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한의사전문회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과정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③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에 한한다)의 면적은 별표 3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09.4.21., 2012.4.10., 2013.3.23., 2017.4.1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⑤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5.>

⑥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은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한다. <신설 2009.4.21.>

⑦ 제3항에 따라 교사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2조제6항제1호의 건축물은 교사로 보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의 건축물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의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면적을 교사로 본다. <신설 2009.4.21., 2012.1.25.>

제5조(교지) ① 대학은 별표 4의 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4의 기준면적을 충족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1. 교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
2. 교지 경계선(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교지는 대학이 교육·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19.>
 1.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
 2.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
- ③ 제1항에 따라 교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2조제6항제1호의 토지는 교지로 본다. <신설 2009.4.21.>
- ④ 대학이 기존의 교지 밖에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학생기숙사의 부지는 기존의 교지(기존의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기숙사와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제6조(교원) ①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조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13.2.15.,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수를 말한다. <개정 2007.12.6., 2017.4.11.>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 대학의 학생정원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전문대학원의 경우는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수
3. 대학원대학 :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의 학생수

③ 삭제 <2013.2.1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에는 겸임교원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5분의 1(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은 3분의 1),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검임 및 초빙교원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4.30., 2005.3.25., 2006.6.7., 2007.12.6., 2008.2.29., 2013.3.23.>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25., 2011.6.27., 2015.7.24., 2017.4.11.>

1.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00억원
2. 전문대학 200억원
3. 대학원대학 100억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5.>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4.30., 2005.3.25.>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9조 삭제 <1998.2.24.>

제10조(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대한 평가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원의 경우에는 4월 1일 현재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9.4.21., 2011.6.27.,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중 제4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부속병원의 기준 충족 여부 및 실습 의무 준수 여부 등에 관한 평가를 할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11.2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당해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한 학과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3.11.20.>

[제목개정 2013.11.20.]

제11조(보고)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국외에 설치·운영 중인 교사를 포함한다)·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원보유현황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은 4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9.4.21., 2011.2.16., 2013.3.23.>

제12조(학교현장의 공표 등) 대학설립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현장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5.>

[본조신설 2001.4.30.]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3에 따른 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2조의4에 따른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교원 및 교사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학계열 대학의 부속시설 교사 확보 기준: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12.30.]

부칙 <제27980호, 2017.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른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5.7.16.] [교육부령 제66호, 2015.7.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제2조(대학설립계획서등의 제출)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의학계열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11월 30일전까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교예정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5.25., 2006.2.28.>

1. 대학의 종류·명칭·위치·학과 또는 학부·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건축계획
3. 교지확보계획
4. 교원확보계획
5. 대학재정운영계획
6. 교육과정운영계획
7. 설립자의 학교경영계획

③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대학을 설립·경영하려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④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대학을 설립·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16.>

1. 정관변경계획서(변경사유서 및 신·구대조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의 통보)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허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8.3.4., 2013.3.23., 2015.7.16.>

[제목개정 2015.7.16.]

제4조(대학설립인가 신청) ①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12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②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기한내에 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대학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8.5.25.>

제5조(심의결과와 제출)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개교예정일 9월전까지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제6조(대학설립인가의 통보등) ①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학설립의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제7조(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7,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대학의 위치변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2014.2.24.>

제8조(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①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을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8.>

1. 총정원이 1천명미만인 경우

$$\text{계열별 환산정원} = (1\text{천명} - \text{총정원}) \times \frac{\text{계열별 학생정원}}{\text{총정원}} + \text{계열별 학생정원}$$

2. 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

$$\text{계열별 환산정원} = (200\text{명} - \text{총정원}) \times \frac{\text{계열별 학생정원}}{\text{총정원}} + \text{계열별 학생정원}$$

②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총정원을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8.>

1. 총정원이 500명미만인 경우

$$\text{계열별 환산정원} = (500\text{명} - \text{총정원}) \times \frac{\text{계열별 학생정원}}{\text{총정원}} + \text{계열별 학생정원}$$

2. 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

$$\text{계열별 환산정원} = (200\text{명} - \text{총정원}) \times \frac{\text{계열별 학생정원}}{\text{총정원}} + \text{계열별 학생정원}$$

제9조(검입교원 등 산정기준)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입교원 및 초빙교원등의 수는 각각 계열별로 검입교원 및 초빙교원등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이를 버린다. <개정 2002.3.8.>

[제목개정 2002.3.8.]

제10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 운영수익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에 따른 운영수익총계에서 전입금수입, 기부금수입 및 국고보조금을 뺀 것을 그 범위로 한다. <개정 2015.7.16.>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은 해당 학년도의 직전 학년도에 발생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7.16.>

1.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학재정운영계획상 편제완성연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금액
2.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제2항 본문에 따른 금액에 그 증설 또는 증원에 따라 증가하는 학교회계 운영수익을 합한 금액

제11조(소득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중 수익사업회계로 경리되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은 그 수익사업회계로부터 일반업무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12조(학교현장의 작성방법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현장의 작성방법과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제목개정 1998.5.25.]

제13조(제출기간등의 조정)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부칙 <제66호, 2015.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회계 운영수익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대학 및 학교법인의 2015년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과 관련하여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록 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6.23.] [대통령령 제27228호, 2016.6.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인증의 실시)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검·평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 대하여 평가·인증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평가·인증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조의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 ①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라 한다)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정기관은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증의 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6.21.]

제3조(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등) ① 인정기관은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인증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과정운영학교의 장은 학년도마다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서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③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제목개정 2016.6.21.]

제4조(인정기관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프로그램 개발 등 평가·인증의 체계화와 품질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인정기관의 지정기준) ①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1.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기구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1의2. 평가·인증 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는 등 평가·인증과 관련한 재정·예산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하는 데 적합한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를 갖추고 있을 것
3.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또는 자문활동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①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등기사항 증명서에 준하는 서류(신청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및 자문활동 실적 내용
4.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명세
5. 평가·인증의 기본방침과 평가실시에 관한 내용을 적은 평가·인증실시요강 및 평가기준
6. 평가·인증의 방법·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7. 평가·인증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적은 자료
8. 그 밖에 신청기관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신청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1.>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기관의 지정 여부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 ④ 교육부장관은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 ⑤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제7조(인정기관의 재지정) ① 인정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5조·제6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7조의2(인정 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그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재지정을 받으려면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제8조(이의 신청) ① 신청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6.21.>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의하여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등)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증정책의 수립과 인정기관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평가·인증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인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인정기관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제6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재지정 및 재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정기관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5.12.30.>
1. 교원
 2. 대학의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학평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이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0.>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신청기관의 임원이거나 임

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인 신청기관의 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당사자인 신청기관의 요청에 따라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인 신청기관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제1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5.12.30.]

부칙 <제27228호, 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증 신청의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신청을 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평가·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이루어진 의료과정운영학교에 대한 평가·인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인증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과정운영학교에 대한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경우 그 평가·인증의 신청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인증의 신청으로 본다.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 정	1999. 9. 16.
개 정	2006. 9. 26.
	2010. 2. 2.
	2011. 1. 24.
	2012. 4. 16.
	2014. 1. 23.
	2016. 6. 29.
	2017. 2. 8.
	2017. 4. 25.
	2018. 2. 5.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의학교육인증단(이하 '인증단')이라 하고 영문 명칭과 약칭은 'Accreditation Board for Basic Medical Education'과 ABBME라 한다. <개정 2016.6.29.>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 정관 제3조 제1항 제6호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 평가인증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인증단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2017.2.8.>

제3조 (목표와 활동) ① 인증단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기본적인 학교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평가하고 인증함을 목표로 한다.

② 이를 위해 인증단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기본적인학교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의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과 준거 개발
2. 평가기준과 준거에 근거한 기본적인학교교육과정과 교육환경 평가 <개정 2017.2.8.>
3. 인증유지를 위한 기본적인학교교육과정과 교육환경 평가
4. 신설 대학의 기본적인학교교육과정과 교육환경 평가
5. 기본적인학교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관한 자문 등 <신설 2016.6.29.>

제2장 조직 및 회의

제4조 (조직) 인증단에는 상설기구인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판정위원회와 비상설 기구인 방문평가단을 두며, 평가인증의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6.29., 2017.2.8.>

제5조 (임원) ① 인증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임원을 둔다. <개정 2016.6.29.>

1. 인증단장은 인증단 업무를 총괄한다.
2. 인증부단장은 인증단장을 보좌하며, 인증단장이 결위할 때 인증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인증단장은 평가인증 경험이 풍부한 의학교육 전문가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하 '의평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6.29.>

③ 인증부단장과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인증 경험이 있는 자로 인증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평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6.29.>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인증단장, 인증부단장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인증단장은 위원장이 되고 인증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6.29.>

제7조 (전문위원회) ① 인증단은 원활한 평가인증 업무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로 제도위원회, 기준위원회, 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2.8.>

1. 제도위원회는 평가인증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 연구, 정책 및 규정 개발 등을 한다.
2. 기준위원회는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수정·보완한다.
3. 관리위원회는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에 관한 평가를 한다.

②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10인 내외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평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6.29.>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각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2.8.>

제8조 (판정위원회) ① 인증단은 방문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을 판정하기 위하여 판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2.8.>

② 판정위원회는 인증단장, 인증부단장,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부, 의학 및 의료계 단체, 타 분야 인증기관에서 각각 추천받은 인사로 구성한다. 인증단장은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7.2.8.>

1. 당연직 위원은 인증단장, 인증부단장,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부, 의학 및 의료계 단체, 타 분야 인증기관에서 각각 추천받은 인사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단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2. 사회참여 위원은 학생 대표 1인, 학부모 대표 1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1인으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인증단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① 인증단장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각 전문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판정위원회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2.8.>

제3장 평가인증

제10조 (대상) ① 인증단은 기본적인학교육을 시행하는 대학에 대하여 기본적인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평가인증한다. <개정 2017.2.8.>

② 인증단은 대학원학술학위과정을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제11조 (인증 유형) 인증유형은 인증(accreditation), 조건부 인증(conditional accreditation), 인증 유예(probation), 불인증(non-accreditation)이 있으며, 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6.6.29., 2017.2.8.>

① 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조건부 인증은 한시적 인증에 해당하며,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1년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③ 인증유예는 불인증 유형에 해당하며,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개정 2017.2.8.>

④ 불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인증을 받은 후에도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불인증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6.6.29., 2017.2.8.>

제12조 (인증 기간 및 시기) ① 인증기간은 6년 또는 4년으로 하되, 기간은 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대학은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학년도에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조건부 인증, 인증유예를 받은 대학은 1년 이내에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9., 2017.2.8.>

제13조 (인증 신청) ① 대학은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차기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기를 신청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인증을 1년 연기할 수 있다. 이 기간의 인증상태는 조건부 인증으로 한다. <개정 2016.6.29.>

③ 대학은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차기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평가 절차 및 방법) ① 평가인증 대상 대학은 인증단의 대학자체평가 연구지침에 따라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단에 제출한다. <개정 2016.6.29.>

② 평가인증 대상 대학의 학생대표는 인증단의 '학생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학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단에 제출한다.

③ 방문평가단은 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 학생보고서, 관련 자료 등을 서면평가 한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평가를 실시하고, 방문평가 종료 후 7일 내에 평가보고서를 인증단에 제출한다.

④ 방문평가 기간은 인증단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 인증단은 방문평가가 실시되기 전에 방문평가위원과 방문평가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며, 대학은 이에 대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인증단이 갖는다.

⑥ 대학이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아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평가에 관한 모든 절차와 방법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인증단에서 한다. <신설 2017.4.25.>

제15조 (방문평가단 구성과 활동) ① 방문평가단은 평가단장과 평가위원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인증단장이 추천하고 의평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2.8.>

② 평가단장은 의학교육과 평가인증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지도력이 있는 전문가로 하며, 평가위원은 전.현직 대학 교수와 외부 평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6.6.29.>

③ 인증단장은 평가인증 대상 대학의 특성을 참고하여, '의학교육 평가인증 윤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맞게 방문평가위원을 추천한다. <개정 2017.2.8.>

④ 방문평가단은 전문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인증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6.29.>

제16조 (평가보고서) ① 인증단은 평가보고서를 해당 대학에 송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방문평가단은 제1항에서 해당 대학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단에 제출한다. <개정 2016.6.29.>

제17조 (방문평가 참관) ① 교육부, 타 학문분야의 대표, 국내외 의학교육 관계자 등은 인증단과 대학의 동의를 받아 방문평가를 참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문평가 참관은 '방문평가 참관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한다. <개정 2016.6.29., 2017.2.8.>

제18조 (비용) ① 평가인증과 인증유지에 따른 제반 비용은 대학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이 부담하는 비용은 평가인증과 인증유지를 위해 사용한다.

1. 평가인증비는 평가인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다.

2. 인증유지비는 2년마다 제출하는 중간평가보고서 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다.

③ 인증단은 대학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결정하여 해당 대학에 통보한다.

제4장 판 정

제19조 (판정) 판정위원회는 대학의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하여 인증유형, 인증기간, 후속조치 등을 결정한다.

② 판정은 '판정위원회의 판정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한다. <신설 2016.6.29.>, <개정 2017.2.8.>

제20조 (판정결과 공지) ① 인증단은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와 최종평가보고서를 판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대학의 총장과 학장에게 통보한다.

② 인증단은 판정결과와 최종평가보고서를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③ 서면평가와 방문평가의 결과에 관련된 제반 문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④ 해당 대학은 평가인증 결과를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인증단은 판정 후 15일이 지난 다음에 담당 정부기관과 관련 기구 등에 판정결과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7.2.8.>

제21조 (재심사) ① 판정결과에 대하여 해당 대학은 의평원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의평원장은 이사장에게 재심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 <신설 2016.6.29.>

③ 해당 대학에 대한 재심사와 업무처리 절차는 '평가인증 결과 재심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7.2.8.>

제22조 (개선계획서) 해당 대학은 판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인증유지와 관리) ① 대학은 인증유지를 위해 2년 마다 개선결과를 포함한 중간평가보고서를 '중간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② 대학은 주요 교육병원의 변경,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소유권 변경, 학생 수의 변화 등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면 사전에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변화계획서는 '주요변화계획서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8.2.5.>

③ 관리위원회는 중간평가보고서와 주요변화계획서를 서면 평가한다.

④ 인증단은 중간평가보고서 또는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면평가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하여 방문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 및 인증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학은 필요 시 자문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6.29.>, <개정 2017.2.8.>

제5장 신설대학 인증

제24조 (대상) 인증단은 신설 대학의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평가하고 인증한다.

제25조 (인증유형) 신설 대학의 인증유형은 예비인증(preliminary accreditation), 예비인증 불가(non-preliminary accreditation), 임시인증(provisional accreditation), 임시인증 불가(non-provisional accreditation)가 있다.

1. '예비인증'은 신설 대학이 '예비인증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예비인증 불가'는 신설 대학이 '예비인증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임시인증'은 기본의학교육을 시작한 신설 대학이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임시인증 불가'는 기본의학교육을 시작한 신설 대학이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26조 (신청) ① 신설 대학은 인가가 난 시점부터 기본의학교육과정의 학생을 모집하기 전까지 '예비인증을 위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방문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9., 2017.2.8.>

② '예비인증'을 받은 신설 대학은 기본의학교육과정의 학생을 모집한 후부터 첫 졸업생을 배출할 때까지 매년 '임시인증을 위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방문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8.>

제27조 (기간 및 절차) ① 예비인증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예비인증 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내에는 재평가인증을 받을 수 없다.

② 임시 인증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임시인증 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내에는 재평가인증을 받을 수 없다.

③ 예비인증 및 임시인증을 위한 제반 비용은 대학이 부담한다.

제6장 보 칙

제28조 (자료 수집) 인증단은 평가인증을 위한 정책수립과 평가인증기준의 개발 등을 위하여 각종 설문조사 및 자료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제29조 (제3자 의견) ① 인증단은 대학의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제3자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 단, 제3자 의견은 평가인증기준에 관한 것으로 제한하며, 익명의 의견은 접수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적 불만, 입학, 임면, 진급, 해고,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개정 2016.6.29.>

② 제3자 의견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해당 대학의 방문평가 1개월 전까지 인증단에 접수되어야 한다.

③ 평가인증과 관련한 제3자 의견을 처리하는 절차는 '제3자의 의견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7.2.8.>

제30조 (외국 의학교육기관의 평가인증) 인증단은 외국에서 인가된 의학교육기관의 기본의학교육과정이 국내 의학교육 및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내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에 대한 업무처리는 인증단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윤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한다. <개정 2016.6.29., 2017.2.8.>

제32조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평가인증에 관련된 인증단의 모든 위원과 사무국 직원은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인증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개정 2016.6.29., 2017.2.8.>

제33조 (평가인증 기록물 관리) 대학의 평가인증 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자료와 기록물은 '평가인증 기록물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평가인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7.2.8.>

제34조 (평가인증기준 검토 및 변경 절차) 인증단의 평가인증기준 검토 및 변경 절차는 '평가인증기준 변경 시행세칙'에 의한다. <개정 2016.6.29., 2017.2.8.>

제35조 (인증단 규정 검토 및 변경 절차) 인증단 규정의 검토 및 변경 절차는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변경 시행세칙'에 의한다. <개정 2016.6.29.>

제36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신설 2016.6.29.>, <개정 2017.2.8.>

부 칙 (1999. 9. 16.)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한국 의학교육인증평가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26.)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2.)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 24.)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16.)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23.)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29.)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8.)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25.)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5.)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록 4] 대학설립을 위한 신청서식 및 작성요령(교육부 안내책자 발췌)

학교법인설립 허가 및 대학설립인가 안내사항

1. 설립규모

가. 최소 설립규모(시설·교원) □ 교사기준 : 학생정원 1,000명을 기준(대학원대학 200명)
□ 교원기준 : 학생정원 500명을 기준(대학원대학 200명)

※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 대학원대학 기준과 같음

나. 계열별 구분(5대계열) :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2. 설립기준

가. 교사 기준면적

계 열 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학생 1인당 기준면적(m ²)	12	17	20	19	20
(전문대학)	8.4	11.9	14.0	13.3	14.0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교사기준면적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나. 교지 기준면적

학생정원	400명 이하	400명초과~1,000명미만	1,000명 이상
면적(m ²)	교사건축면적이상	교사기준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의 2배이상

※ 1. “학생정원”은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학생정원임

2. “건축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건축면적임

다. 교원 산출기준(학사과정의 교원1인당 학생수 기준)

계 열 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 학	예·체능	의 학
교원1인당 학생수(명)	25	20	20	20	8

※ 대학원대학의 경우는 대학원생수를 2배로, 대학과 대학원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대학원생수를 1.5배로 가중하여 교원수를 산출함

라. 수익용기본재산

대학의 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되, 그 총액의 3.5%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다만 확보기준을 초과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소확보액 : 대학 100억원, 전문대학 70억원, 대학원대학 40억원 이상

※ 1개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설치학교별 수익용기본재산 합산액 이상 확보

※ 학교회계운영수익은【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에 의

한 등록금 수입, 교육부대 수입(입시수수료, 증명.사용료 등), 교육외 수입
(예금이자, 잡수입 등)임

3. 학교법인설립허가 신청서(대학설립계획서) 및 대학설립인가 신청서의 제출

가.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대학설립계획서)제출 : 연중 수시

나. 대학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 개교예정일 12월전까지

(제 I -1-1호 서식)

- 91 -

(제 I -2-2호 서식)

시설 및 교원 확보총괄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개설학과(계열별)</th> <th>학생 정원</th> <th colspan="2">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계열</td> <td>명</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2">계열</td> <td>명</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2">계열</td> <td>명</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2">(계)</td> <td>명</td> <td colspan="2"></td> </tr> </tbody> </table>									개설학과(계열별)		학생 정원	비 고		계열		명			계열		명			계열		명			(계)		명		
개설학과(계열별)		학생 정원	비 고																														
계열		명																															
계열		명																															
계열		명																															
(계)		명																															
구 분			개설학과 (계열별)	최소기준 (A)	확보계획 (B)	확보계획의 확보율(%) (B)/(A)	소요금액 (백만원)	비 고																									
1	교 사	㎡	계열																														
			계열																														
			계																														
2	교 지	㎡	계열																														
			계열																														
			계																														
3	교 원	명	계열	명	명	명																											
			계열	명	명	명																											
			계																														

※ 비고 : 계열구분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임

(제 I -2-3호 서식)

교사(校舍) 건축계획서											
시설별 구분	개설학과 (계열별)	확보계획 (㎡)	건축 소요금액(계획·추정액)		비 고						
			㎡당, 건축단가(천원)	총소요금액(백만원)							
	계열										
계											
가. 교사는 교육기본시설(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도서관, 학생회관, 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과 지원시설(체육관, 강당, 전자계산소, 실습공장, 학생 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로 함(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②) 나.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현장이 정하는 바에 의함											
교지(校地) 확보계획서											
소재지	지번	지목	등기부상 소유자	지적 (㎡)	매입 소요금액(계획·추정액)					지가 (백만원)	※ 근저당등 설정금액 (백만원)
					설립자 (개인)	법인	무상 출연	매매 계약	계		
계											
※ 붙임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교원 확보계획서											
개설학과 (계열별)	최소기준(A)	확보계획(B)			확보계획의 확보율(%) (B/A)	소요예산 (백만원)					
		개교전	개교후*	계							
계열											
계열											
계											
* 참고사항 : 개교전 교원의 1/2이상 확보, 개교후 나머지 1/2은 개교후 학생정원에 맞게 연차적으로 편제완성연도전까지 확보(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 I -2-4호 서식)

대학재정운영 계획서(4년간)						
가. 운영수익						
(단위 : 천원)						
관	항	목	년 도 별 수 입 액			
			20 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A)						
나. 운영비용						
(단위 : 천원)						
관	항	목	년 도 별 지 출 액			
			20 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B)						
운영수익과의 차액(A-B)						
※ 부속서류 : 1. 등록금 및 수강료 산출 기초자료 2. 인건비 산출 기초자료(교원과 직원을 구분 표기할 것) 3. 운영수익.비용의 차액에 대한 사용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① 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은 수업연한에 따라 작성.
- ②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교육부령) 별표 3(운영계산서계정과목명세표)중 학교회계에 속하는 과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대학의 사정에 따라 과목 및 해소를 달리할 수 있음.
- ③ 운영수익.비용의 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상기 특례규칙 별표 1의 자산지출계정과목(1200-1220항목)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④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②.③항에서 정하는 과목 등의 기준범위안에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음.
- ⑤ 등록금 및 수강료는 적정수준(기존대학과 비교되는 수준 및 인상율등)을 유지하여야 하고, 또한 편제완성년도까지는 학생1인당 등록금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인가신청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변경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기준도 변경하여야 함.
- ⑥ 교원 및 직원의 급여는 적정수준(기존대학과 비교되는 수준 및 인상율 등)을 반영하여 작성함.
- ⑦ 연도별 수입액 및 지출액은 개교예정연도부터 시작하여 향후 4년간의 대학재정운영 계획서를 작성함.

【학 교 헌 장】

가. 학교헌장 제정의 필요성

- 대학설립준칙주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정한 설립기준을 충족하면 자유롭게 대학 설립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려되는 대학교육기관의 남설과 대학교육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학교헌장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이를 교육수요자에게 공표하도록 하며
- 학교헌장의 이행여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한편 대학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데 있음.

나. 학교헌장의 내용

-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교육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제시(약속)하는 대학의 설립목적, 교육목표, 교육과정운영, 인사 및 재정운영, 교육·연구시설·설비 확보계획, 중·장기 발전계획 등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과 미래의 발전방안 및 계획을 포함함.

다. 학교헌장의 성질

- 학교헌장은 설립주체 및 해당대학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며 실천계획인 한편 교육공급자로서 교육수요자에게 제시하는「약관」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학교내 규칙인 학칙과 법인활동의 근거규범인 법인정관과는 구별되나, 학칙 또는 정관과는 이념적 우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라. 학교헌장의 변경

- 학교헌장은 그 성질·내용면에서 상당기간 불변의 특성을 지녀야 하고 또한 그 변천과정에서도 널리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한 체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설립 당시의 학교헌장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추가로 보완(누가기록)하여야 함.

마. 학교헌장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한 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목적) : 대학 설립의 취지와 배경, 대학설립자의 건학이념 및 육영의지

제2조(교육목표) : 대학의 교육목표

제2장 교육과정

제3조(특성화 방안) : 대학설립취지와 교육이념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학이 중점육성할 분야와 특성화 방안

제4조(개설학과.학부의 발전방안) : 개설학과의 교육목적, 특성, 발전방안

제5조(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개설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계열학과의 교육과정
- 학부의 경우 전공영역
- 산학협동사항

제3장 교육여건

제6조(교수확보) : 분야별 교수확보 계획

제7조(시설설비 확보) :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시설.설비 및 교육자료 확보계획

제8조(기타시설 확보) : 교육기본시설 이외의 지원시설과 부대시설 확보계획

제4장 학사관리

제9조(학생선발) : 학생선발의 기준과 방식

제10조(학생정원관리) : 전과, 편입학 등 학생정원 관리기준과 방식

제11조(학기) : 학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대학간 학술교류 등) : 국내.외 타대학간 학술교류 및 상호학점인정

제5장 대학운영

제1절 인사관리

제13조(교직원의 채용기준) : 분야별 교직원의 채용기준

제14조(교직원채용 절차) : 교직원 채용에 공정성 확보를 위한 채용절차

제15조(교수평가) : 교수들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교수평가제 시행방안

제16조(교수의 질 제고를 위한 계획) : 교수의 연구력향상 및 교수질 제고를 위한 방안

- 교수연수계획
- 학술행사 참가지원
- 연구활성화 계획 등

제2절 재 정

제17조(재정확보 방안) : 대학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방안

- 세입의 분야별 확보계획

제18조(발전기금 모집계획) : 대학발전기금모금을 위한 방안 및 사용계획

제19조(재정공개) : 대학재정 운영상황의 공개범위 및 방식

제20조(재정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 대학재정운영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21조(법인의 수익용재산 확보계획 및 관리) : 대학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계획 및 관리

제6장 후생복지

제22조(학생장학금) : 장학기금 확보 및 학생장학금 지급계획

제23조(학생자치기구 지원) :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활동 지원계획

제24조(학생기숙사) : 학생기숙사 건립 및 운영계획

제25조(교직원복지) : 교직원숙소 건립, 운영계획 및 후생복지

제26조(학생 진로지도 및 취업대책) : 졸업예정 및 졸업생들의 진로지도 및 취업알선

제7장 장.단기 발전계획

제27조(장.단기 발전계획) : 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

제8장 보칙

제28조(대학현장의 보완) : 대학현장은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누가 기록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완할 수 있음

제29조(공표일) 이 현장은 년 월 일 공표한다.

Ⅱ. 학교법인설립허가신청서(교사, 교원, 재정, 학교헌장 부분 발췌)
(제 Ⅱ-1호 서식)

대학설립인가 신청서																						
신 청 인	①법 인 명 칭	학교법인 학원(한자)																				
	②소 재 지	(우편번호)																				
	③전 화 번 호	(주간)		(야간)																		
	④대 표 자	(한자)																				
인가신청 내용 (학교의 종별, 명칭 및 위치)	⑤학 교 종 별																					
	⑥학 교 명 칭	대학(한자)																				
	⑦학 교 위 치	(우편번호)																				
	⑧전 화 번 호	(주간)		(야간)																		
	⑨개 설 학 과 및 학 생 정 원	개 설 학 과		학 생 정 원		비 고																
		대계열	소계열	학과	입학정원		편제정원															
	계()			명	명																	
⑩개 교 예 정 일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제2항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귀하																						
※ 붙임서류 <table border="0"> <tr> <td>1. 시설·교원 및 재산 확보 명세서</td> <td>1부</td> <td>2. 교사 확보 명세서</td> <td>1부</td> </tr> <tr> <td>3. 교지 확보 명세서</td> <td>1부</td> <td>4. 교원 확보 명세서</td> <td>1부</td> </tr> <tr> <td>5.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명세서</td> <td>1부</td> <td>6. 대학운영경비와 유지방법</td> <td>1부</td> </tr> <tr> <td>7. 학칙</td> <td>1부</td> <td>8. 학교헌장</td> <td>1부</td> </tr> </table>							1. 시설·교원 및 재산 확보 명세서	1부	2. 교사 확보 명세서	1부	3. 교지 확보 명세서	1부	4. 교원 확보 명세서	1부	5.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명세서	1부	6. 대학운영경비와 유지방법	1부	7. 학칙	1부	8. 학교헌장	1부
1. 시설·교원 및 재산 확보 명세서	1부	2. 교사 확보 명세서	1부																			
3. 교지 확보 명세서	1부	4. 교원 확보 명세서	1부																			
5.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명세서	1부	6. 대학운영경비와 유지방법	1부																			
7. 학칙	1부	8. 학교헌장	1부																			

(제 II-2호 서식)

시설·교원 및 재산 확보 명세서																							
<table border="1"> <thead> <tr> <th>개설학과(계열별)</th> <th>학생 정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계열</td> <td>명</td> <td></td> </tr> <tr> <td>계열</td> <td>명</td> <td></td> </tr> <tr> <td>계열</td> <td>명</td> <td></td> </tr> <tr> <td>(계)</td> <td>명</td> <td></td> </tr> </tbody> </table>									개설학과(계열별)	학생 정원	비 고	계열	명		계열	명		계열	명		(계)	명	
개설학과(계열별)	학생 정원	비 고																					
계열	명																						
계열	명																						
계열	명																						
(계)	명																						
구 분			개설학과 (계열별)	최소기준 (A)	확보계획 (B)	확보율(%) (B)/(A)	소요금액 (백만원)	비 고															
1	교 사	㎡	계열																				
			계열																				
			계																				
2	교 지	㎡	계열																				
			계열																				
			계																				
3	교 원	명	계열	명	명	명																	
			계열	명	명	명																	
			계																				
4	수익용기본재산	백만 원																					
합 계																							

(제 II-3호 서식)

교사(校舍) 확보 명세서											
시설별 구분	개설학과 (계열별)	확보면적 (㎡)	건축 소요금액		비 고						
			㎡당, 건축단가(천원)	총소요금액(백만원)							
	계열										
계											
※ 붙임서류 가. 교사 평면도(각실 배치명기) 및 배치도 1부 나. 건축허가서.사용승인서(구 준공검사서).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1부 다. 총공사비중 기지급금과 미지급금 내역서(요약표) 1부											
교지(校地) 확보 명세서											
소재 지	지번	지목	등기부상 소유자	지적 (㎡)	교지 편입의 면적(㎡)					지가 (백만원)	※ 근저당등 설정금액 (백만원)
					설립자 (개인)	법인	무상 출연	매매 계약	계		
계											
※ 붙임서류 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나. 교지 구입비중 기지급금과 미지급금 내역서(요약표) 1부 ※ 참고사항 : 지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한 평가 가격											
교원 확보 명세서											
(년 월 일 현재)											
개설학과 (계열별)	교원 성명	연령 (세)	직 급	전 공	최종학위 명 칭	이 사 회 의결일자	교 육 부 임 용 보 고 일	소요예산 (백만원)			
계											
※ 붙임서류 : 교원 임용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참고사항 : 개교전 교원의 1/2이상 확보, 나머지 1/2은 개교후 학생정원에 맞 게 연차적으로 편제완성연도전까지 확보(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 II-4호 서식)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명세서					
(1) 기준산출 (단위 : 천원)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및 동령시행규칙 제10조					
연 도 별	운영수익총액(A)	공제액(규칙제10조)(B)	기준액(A-B)	비 고	
년도					
년도					
년도					
년도					
기준해당액				편제 완성 연도 기준	
(2) 확보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소득예정액	대학운영 경비충당액
가. 정기예금 등					
나. 부 동 산					
다. 기 타					
기준해당액					
(작성유의 사항)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득한후 제출하는「허가사항이행보고서」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3) 재산목록과 소득예정액							
(단위 : 천원)							
구 분	예금의 종류	예금주	예치기관	잔고일자	금 액	소득예정액	비 고
(1) 정기예금등							
	계						
(2) 상장주식 국.공채	상장주식 국.공채명칭	소유주	액면가	수량	잔고일자	금 액	소득예정액
	계						
(3) 토자건 물	소재지	소유주	면적 (㎡)	취득년월일	평가금액	소득예정액	근저당용 설정금액
	계						
합계 (1) + (2) + (3) + (4)							

※ 불입서류

1. 정기예금 등 유동자산은 금융기관 발행 잔액 증명서
2. 재산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 산출근거와 증빙서류(최근 3년간의 소득실적)
3. 부동산(토지.건물)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4. 확보기준을 초과한 재산을 별지로 재산목록 작성

(제 II-5호 서식)

【대학운영경비와 유지방법】

1) 학교법인 예산서(4개년간)

가) 세입예산

관	항	목	20 년	20 년	20 년	20 년
계						

나) 세출예산

관	항	목	20 년	20 년	20 년	20 년
계						

※ 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은 수업연한에 따라 작성

2) 대학예산서(4개년간)

가) 세입예산

관	항	목	20 년	20 년	20 년	20 년
계						

나) 세출예산

관	항	목	20 년	20 년	20 년	20 년
계						

※ 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은 수업연한에 따라 작성

【학 칙】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제1항을 참고하여 작성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제6차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연구팀 회의록

가. 일 시 : 2018년 5월 2일(수) 16:00

나. 장 소 : 의평원 회의실

다. 참 석 : 김영창, 나승주, 양은배, 윤태영, 이근미 연구위원

박중신(서울의대), 박형욱(단국대의대), 안덕선(연세의대), 이영환(영남의대)
자문위원

라. 회의결과

☐ 보고 사항

- 지난 5차 회의에서 연구팀 논의내용과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안 타당화를 위하여 의학교육과 평가인증 분야의 전문가 5명을 모시고 전문가 그룹 자문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사전 설문문항과 연구팀 주요 논의내용을 정리하여 회의 전에 회람하였음.

☐ 토의 사항

1. 의학교육 및 평가인증 전문가 그룹 자문 내용

1)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의 내용과 방법

-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대학 설립 시 갖추어야 하는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여부도 포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기존 의학교육 평가인증이 교육 프로그램 여부와 시행 실적을 동시에 평가하는데 반해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은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지를 우선 평가하고 차후에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매해 평가인증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신설 의학교육기관에 ASK2019 인증기준을 시기에 따라 적용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재의 평가 가이드를 신설 의학교육기관에 맞추어 수정해야 함.

2)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적용 시작 시기

- 현재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설립 주체가 교육부에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대학설립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 후 인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설립인가 단계부터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부실 의학교육기관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학교육기관 인가를 심의할 때에는 대학설립심의위원회에 의평원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한다면 인가 단계부터 개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관련 법규 검토 결과 신설 의학교육기관 인증은 대학설립인가 이후, 의평원의 예비 인증을 받아야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규/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임. 미국의 신설 의학교육기관 인증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참고하기로 함.
-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예비인증에서 불인증을 받았을 때 학생모집 중지, 모집정원 감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예비인증을 받아야 학생모집을 할 수 있도록 법규/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함.
- 현재 고등교육법을 유지하면서 부실 대학 설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인가 이후 예비인증을 받은 이후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규정 수정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교육부의 대학설립인가 담당 부서와 대학평가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설득이 필요함.

3)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에 의예과 시기 포함 여부

- 의과대학으로 신설될 경우 의예과 시기를 평가인증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 ASK2019 기준과 같이 기본의학교육과정만을 평가대상 기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ASK2019 기준에 의예과 기간에 대한 별도의 평가인증 기준이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기준을 개발해야하는 어려움도 있음.
- 그러나 학생 모집 전 예비인증 이후부터 기본의학교육과정 평가인증까지의 공백이 생기며, 의학교육 프로그램은 의예과와 의학과를 모두 포함하므로 의예과 기간도 평가대상 기간으로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의학교육 프로그램에 의예과와 의학과가 모두 포함되므로 오히려 ASK2019 인증기준에 의예과 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의예과와 의학과 구분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관련 연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추후 연구팀에서 더 논의해야겠지만 현재는 의예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된 내용이 없고 신설 의학교육기관 인증에만 의예과 기간을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예과 기간 포함여부는 인증기준에 별도로 언급하기보다는 의예과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정도가 현실적임.

4) 신설 의학교육기관에 인증기준 적용 시점과 기준안 검토

- 신설 의학교육기관은 매해 평가인증을 받게 되며, 적용 기준은 연구팀이 제시한 ASK2019 바탕으로 1단계를 개교전(설립인가 이후 학생 모집 전, 예비인증), 2단계를 기본의학 전(예과 2학년), 3단계를 임상실습 전(본과 2학년), 4단계를 졸업시점으

로 구분하여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의견이 모아짐.

- 신설 의학교육기관은 1단계인 예비인증 이후 매년 임시인증을 받아야 하며, 1단계 인증은 인적·물적 재원 확보와 의학교육 프로그램의 계획이 평가의 내용이었던면, 개교 후에는 계획의 이행 정도와 차기 단계의 계획을 함께 평가하여야 함.
- 다만 신설 의학교육기관의 경우 예비인증 시 기초/임상 교원과 부속병원 확보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개교 이후에는 계획 이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시 정량적인 수치를 평가 가이드에 제시하여야 할 것임. 특히 교원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기초-임상교원의 적절한 수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평가 가이드에 명시 해주어야 함.

5) 현행 신설 의학교육기관에 인증기준 규정 검토

- 현행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규정은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중 ‘제5장 신설대학 인증’으로 제24조~제27조로 명문화 되어 있음. 그러나 예비인증 불가의 경우 1년 이내에 재평가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한 절차나 사후에 대한 조치(예: 학생모집 정지 등)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또한 현재 신설대학 인증 규정에는 예비인증과 임시인증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임시인증의 경우 법규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증/조건부인증/인증유예/불인증과는 다른 형태이므로 임시인증 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의 효력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즉 ‘임시인증 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불인증’의 개념과 다르므로 매해 인증평가를 받아야하는 것 외에는 입학생 의사국시 응시 금지 등의 법규 적용이 어려움.
- 기존의 ‘임시인증’을 ‘조건부인증’으로 수정한다면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예비인증 이후 매해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과 시행령 적용이 가능할 것임.
- 예비인증 이후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유형을 조건부인증/인증유예/불인증으로 수정하여 규정 보완이 필요함. 이렇게 규정을 보완할 경우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고 준비과정이 미진할 경우 ‘불인증’을 부여하면 이후에는 교육부에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
-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을 별도의 규정으로 독립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연구팀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2. 제 34차 한국의학교육학술대회 의평원 기관주관 프로그램 발표 및 설문 준비

- 6월 2일(토) 9:00부터 진행되는 한국의학교육학술대회 기관주관 프로그램에서 ‘신설 의대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발 연구 관련 발표는 김영창 의평원 원장이 담당하기로 함.

- 의학교육학회 참석 대상에게 설문할 설문지 초안을 나승주, 이근미 위원이 준비하여 연구팀에 회람하기로 함.

제34차 의학교육학술대회 의평원 기관주관 프로그램

- 일시: 2018. 6. 2(토) 09:00-10:30
- 장소: 창원컨벤션센터 700A 회의실

주제: 의학교육 평가인증 개선 방향

09:00 - 09:30 신설의대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발 연구 관련 발표 -연구팀
 09:30 - 10:00 ASK2019 평가인증 제도 방향 -----박원균 부원장
 10:00 - 10:30 평가인증 기준 Q&A 및 개정 방향 -----인증기준 위원회
 10:30 폐회(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발 연구팀 회의)

3. 차기회의 일정

- 차기 회의는 6월 2일(토) 한국의학교육학술대회 기관 주관 프로그램 종료 후 10:30에 개최하기로 함.

4. 별첨자료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발 연구] 전문가 그룹 인터뷰 사전배포 자료

- 이상과 같이 보고 및 논의한 후, 18:00에 회의를 종료함.

2018. 05. 02.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 장 김 영 창
 기 록 나 승 주

[별첨자료]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발 연구] 전문가 그룹 인터뷰 사전배포 자료

교수님께

안녕하십니까? 교육, 연구, 진료로 바쁘신 중에도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발 연구] 전문가 그룹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자료는 전문가 그룹 인터뷰 당일(5월 2일(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그동안 본 연구팀이 논의하였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주요 질문을 사전에 전달하여 드리고자 보내드리는 자료입니다.

전문가 그룹 인터뷰에 참석이 어렵다고 회신 주신 교수님께서서는 아래 질문에 의견을 적으신 후 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발 연구팀 올림

1. 전문가 그룹 인터뷰 사전 질문

- 1)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의학교육 평가인증과 차이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2)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을 기준을 기존 기준 적용하는 방법과 신설 의학교육기관에 맞춘 새 기준을 개발하는 방법 중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의 적절한 시작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4)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에 의예과 시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5)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으로 ASK2019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6) 연구팀은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시점을 ① 개교 전, ② 기본의학 시작 전, ③ 임상실습 시작 전, ④ 졸업시점 4단계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이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7) 연구팀이 제시하는 ASK2019 신설 의학교육기관 단계별 평가인증 기준안(첨부 1, 본 자료 4-9 페이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8) 현재 신설대학 인증 규정(첨부 2, 본 자료 10 페이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완이 필요하다면 의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9) 현재는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5장에 신설대학 인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설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규정을 별도의 규정으로 독립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10)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임시인증 단계에서 조건부 인증 또는 인증유예를 받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조치가 필요하다면 어느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1)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교육부 또는 복지부에 관련 법규의 개정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될 경우, 고려해야할 점 등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 12) 기타 연구팀에 전해주실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부터 본 연구 진행 개요와 첨부자료를 제시하여 드립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2. 본 연구 진행 개요

가.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신설 의학교육기관의 질 보장 및 질 관리를 위하여 1) 대학설립과 관련된 현행 법령과 평가인증 과정 분석 후 개선점 도출하고, 2) 외국 신설의학교육 인증기준 및 규정과 국내 선행연구 및 현행 신설대학 평가인증 기준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3)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절차와 기준 개발 및 타당화를 거쳐, 4) 신설 의학교육기관 인증과 관련된 규정 수립 후 정책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연구팀 주요 논의내용

1)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 신설 의학교육기관 인증도 궁극적으로는 기존 대학과 동일한 수준의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ASK2019 인증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 평가인증 시점을 ① 개교 전, ② 기본의학 시작 전, ③ 임상실습 시작 전, ④ 졸업시점 4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기로 함.
- 단계별 인증기준은 [첨부 1]과 같음.

2) 설립인가 후/학생모집 전에 6년간의 교육계획서 제출, 매해 신설대학 평가인증 실시, 신입생이 4학년이되는 해 8월에 본평가 받아야 함.

3)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현재 법규에는 개교예정일 ‘8개월 전’에 설립인가 통지시점으로 되어있음. 의평원의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5장 신설대학 인증 제26조 ①항은 인가 난 시점부터 기본의학 교육과정의 학생을 모집하기 전까지 ‘예비인증을 위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방문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8개월 동안 평가인증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법규 개정이 필요함
-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을 4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할 때 각 단계에서 해당 기관이 인증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학생모집 정지 등의 제대 규정 마련이 필요함.

4) 신설 의학교육기관 단독 규정 마련 검토

- 현재는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안에 신설 대학 인증 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나, 신설 대학 인증만 별도로 제시하는 단독 규정으로 독립하는 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3. 첨부자료

[첨부 1] ASK2019 신설 의학교육기관 단계별 평가인증 기준안

ASK2019 신설 의학교육기관 단계별 평가인증기준안(음영: 기준적용 시작시기)

구분		K-기본기준	1단계 (개교전)	2단계 (기본의학전)	3단계 (임상실습전)	4단계 (졸업시점)
1 사명관정기관	1	의과대학은 대학의 사명을 정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보건의료분야의 관계자들이 인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	○	○
	2	의과대학의 사명에는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다양한 의학 분야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 그리고 졸업 후 교육과 평생 학습하는 의사양성을 위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	○	○	○
	3	의과대학은 사명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	○	○	○
	1	의과대학은 자율성이 보장되고, 교수와 교직원들이 교육과정의 설계와 실행, 그에 필요한 자원 활용 등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	○	○	○
	1	의과대학은 사명에 근거하여 졸업성과를 규정하고 있다.	○	○	○	○
	2	의과대학은 학생이 동료 학생, 교수진, 보건의료 인력, 환자와 보호자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	○	○
2 교육과정	3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	○	○	○
	1	의과대학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학의 사명과 졸업성과의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	○	○	○
	1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에 근거한 전체 교육과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	○	○	○
	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	○	○	○
	3	의과대학은 평등 원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	○	○	○
	1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분석과 비판적 사고를 포함하는 과학적 방법의 원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	○
2	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의학연구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	○
	3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근거중심의학의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	○

구분	K-기본기준				1단계 (개교전)	2단계 (기본의학전)	3단계 (임상실습전)	4단계 (졸업시점)
3	1	의과대학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 이해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 개념과 원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	○
	2					○	○	○
4	1	의과대학은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	○	○
5	1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	○	○
	2	의과대학은 졸업 후 진료가 가능하도록 임상의학의 학습에 연계하고 있다.				○	○	○
	3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에 임상실습 전 준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	○	○
6	1	의과대학은 적절한 임상실습 교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
	2	의과대학은 환자인전을 강조한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
	3	의과대학은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 간에 적절한 조화를 이룬 교육과정이 있다.				○	○	○
7	1	의과대학은 관련 학문, 학과, 과정이 수평 통합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	○
	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교육과정위원회는 이도한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	○	○	○
8	1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위원회에 교직원과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고 있다.			○	○	○	○
	2	의과대학은 졸업 후 교육을 감안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	○	○	○
3 학생평가	1	의과대학은 학생평가의 원칙,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	○
	2	의과대학은 학생평가에 지식, 술기, 태도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	○	○
	3	의과대학은 다양한 평가방법과 형식을 사용하여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	○	○
	4	의과대학은 학생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	○

구분	K-기본기준				1단계 (개교전)	2단계 (기본의학전)	3단계 (임상실습전)	4단계 (출업시점)
2	1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와 교육방법에 적합하게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	○	○
	2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	○	○
	3	의과대학은 학생의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	○	○
	4	의과대학은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균형 있게 실시하고 있다.				○	○	○
3	1	의과대학은 객관적인 원칙에 근거한 입학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	○	○	○
	2	의과대학은 특별전형 모집요강에 입학정원과 선발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	○	○	○
	1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학업상담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고 있다.			○	○	○	○
	2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	○	○
4	3	의과대학은 학생의 사회적, 재정적, 개인적 요구를 다루는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	○	○
	4	의과대학은 학생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	○	○	○
	5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주거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기숙사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	○	○	○
	6	의과대학은 학생상담과 지원에 관련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	○	○	○
5	1	의과대학은 사명, 교육과정 설계, 관리, 평가와 그 외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학생대표의 적절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	○	○	○
	2	의과대학은 학생활동과 학생의 자치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	○	○	○
	1	의과대학은 세계의학교육연합회가 권고하는 기초의학 분야별로 적절한 수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다.				○	○	○
	2	의과대학은 의학교육 담당기구가 있고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수가 있다.			○	○	○	○

구분	K-기본기준	1단계 (개교전)	2단계 (기본의학전)	3단계 (임상실습전)	4단계 (졸업시점)
구분	3	○	○	○	○
	4		○	○	○
	5	○	○	○	○
	6	○	○	○	○
	1	○	○	○	○
	2	○	○	○	○
2	3	○	○	○	○
	4	○	○	○	○
	5	○	○	○	○
	6	○	○	○	○
	1	○	○	○	○
	2	○	○	○	○
6대학자립	3	○	○	○	○
	4	○	○	○	○
	5	○	○	○	○
	6	○	○	○	○
	1	○	○	○	○
	2	○	○	○	○

구분	K-기본기준	1단계 (개교전)	2단계 (기본의학전)	3단계 (임상실습전)	4단계 (졸업시점)
7	의과대학은 교수들의 연구를 위한 적절한 공간과 시설 설비를 갖추고 있다.	○	○	○	○
	의과대학은 교직원, 학생, 환자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	○	○	○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량의 환자와 충분한 수의 환자를 확보하고 있다.		○	○	○
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상실습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	○	○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진료행위에 대한 관리체계가 있다.		○	○	○
	의과대학은 교육활동에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구성원이 전자교육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	○	○
3	의과대학은 의학연구역량을 개발하는 정책이 있다.	○	○	○	○
	의과대학은 연구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	○	○
	의과대학은 학생의 연구시설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	○	○
5	의과대학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	○	○	○
	의과대학은 교육과정 개발, 교수법과 평가방법 개발에 대한 교육 전문성 활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	○	○	○
	의과대학은 교직원과 학생이 국내외의 교육 기관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다.	○	○	○	○
7 교육평가	의과대학은 교육의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	○
	의과대학은 교육평가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의과대학은 교육평가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	○

구분	K-기본기준				1단계 (개교전)	2단계 (기본의학전)	3단계 (임상실습전)	4단계 (졸업시점)
	2	1	3	4				
		의과대학은 교육자와 학생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다.	의과대학은 학생과 졸업생 코호트에서 사망, 의도한 교육성과, 교육과정, 투입한 자원에 관련된 수행능력을 분석하고 있다.	의과대학은 교육 모니터링과 교육평가 활동에 주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다.			○	○
		1	1	1	○	○	○	○
		2			○	○	○	○
		3			○	○	○	○
8 대학운영체계개선								
9 시설환경개선								

제5장 신설대학 인증

제24조 (대상) 인증단은 신설 대학의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평가하고 인증한다.

제25조 (인증유형) 신설 대학의 인증유형은장 예비인증(preliminary accreditation), 예비인증 불가(non-preliminary accreditation), 임시인증(provisional accreditation), 임시인증 불가(non-provisional accreditation)가 있다.

1. ‘예비인증’은 신설 대학이 ‘예비인증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예비인증 불가’는 신설 대학이 ‘예비인증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임시인증’은 기본적인학교육을 시작한 신설 대학이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임시인증 불가’는 기본적인학교육을 시작한 신설 대학이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26조 (신청) ① 신설 대학은 인가가 난 시점부터 기본적인학교육과정의 학생을 모집하기 전까지 ‘예비인증’을 신청하고 방문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9., 2017.2.8.>

② ‘예비인증’을 받은 신설 대학은 기본적인학교육과정의 학생을 모집한 후부터 첫 졸업생을 배출할 때까지 매년 ‘임시인증’을 위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방문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8.>

제27조 (기간 및 절차) ① 예비인증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예비인증 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내에는 재평가인증을 받을 수 없다.

② 임시 인증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임시인증 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내에는 재평가인증을 받을 수 없다.

③ 예비인증 및 임시인증을 위한 제반 비용은 대학이 부담한다.

[부록 6] 의학교육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연구 설문결과

- ◎ 설문일시: 2018. 05. 31(목) - 06. 02(토)
- ◎ 대 상: 의학교육학회 참석자 전체 중 69명 응답
- ◎ 방 법: 설문지 인쇄본 배포

I. 응답자 정보

1. 응답자 소속(중복응답)

구분	응답 수(명)	비율(%)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67	66.3
한국의학교육학회	14	13.9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7	6.9
한국의학교육평가원	10	9.9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0	0.0
의료정책연구소	1	1.0
의학교육관련 컨소시엄	2	2.0
기타	0	0.0
합계	101	100.0

2. 중복소속 응답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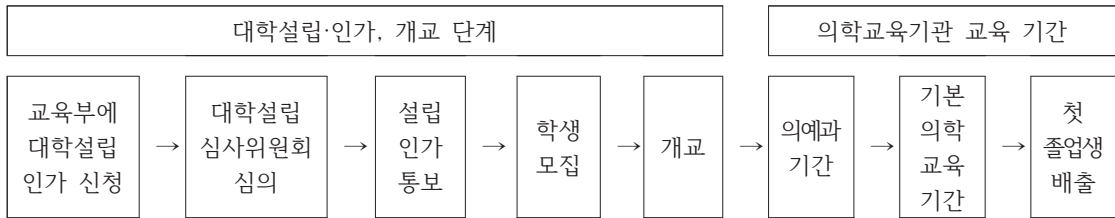
구분	응답 수(명)	비율(%)
1개 기관 소속	50	72.5
2개 기관 소속	8	11.6
소속기관 2개 이상 그룹 (모두 교수직급)	10	14.5
4개 기관 소속	0	0.0
5개 기관 소속	1	1.4
합계	69	100.0

3. 응답자 직급

구분	응답 수(명)	비율(%)
기초의학계열	16	23.2
임상의학계열	30	43.5
인문사회계열	6	8.7
기타	1	1.4
무응답	4	5.8
합계	57	82.6
의과대학/의전원 연구원	0	0.0
의과대학/의전원 교직원(조교포함)	8	11.6
의학교육 관련 학회/협회/기관 직원	1	1.4
기타: 학생, 학위과정생	2	4.3
합계	6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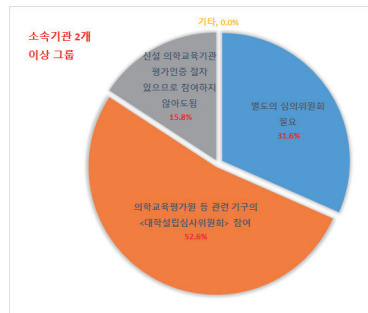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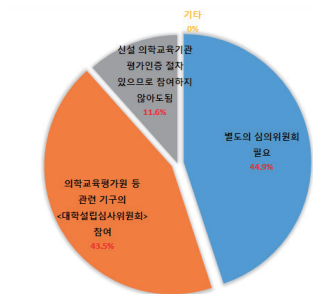
II. 설문 문항별 응답 결과

※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의거한 대학설립 및 개교 절차와 의과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시행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모집’이란 신입생 선발을 의미하며, ‘개교’란 학교의 공식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1. 의학교육기관의 설립인가 심의의 경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와는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의학교육기관 설립인가만을 심사하는 위원회는 별도로 없으며, 대학설립을 심사하는 위원회에도 의학교육평가원 등 의학 관련 기구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분	전체		소속기관 2개 이상 그룹	
	응답 수 (명)	비율 (%)	응답 수 (명)	비율 (%)
<대학설립심사위원회>와는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	31	44.9	6	31.6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없더라도, 의학교육기관의 설립인가에 한해서는 기존의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 의학교육평가원 등 의학 관련 기구가 참여하면 된다.	30	43.5	10	52.6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절차가 있다면 설립심사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8	11.6	3	15.8
기타	0	0	0	0
합계	69	100	1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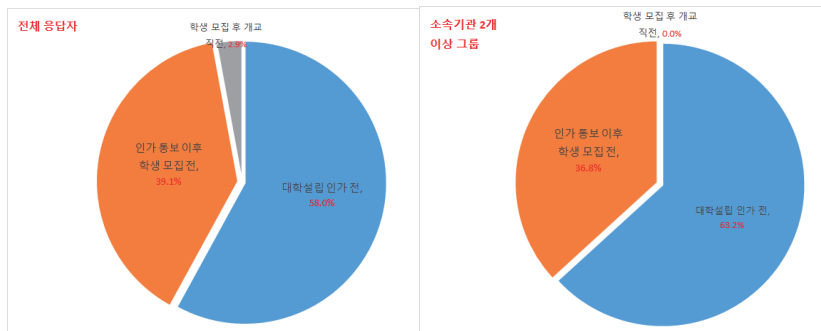
2. 현재의 법령에는 교육부의 설립인가가 나면 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 평가 없이도 학생모집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행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운영을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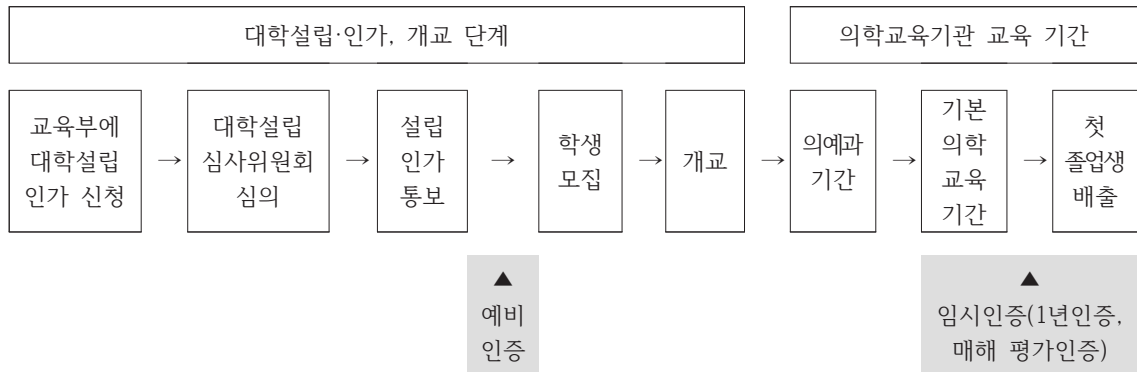
구분	전체		소속기관 2개 이상 그룹	
	응답 수 (명)	비율 (%)	응답 수 (명)	비율 (%)
평가인증을 통과해야만 학생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7	97.1	19	100
설립인가 이후에 평가인증을 시행하면 된다.	2	2.9	0	0
기타	0	0	0	0
합계	69	100	19	100

3.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은 어느 시점에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체		소속기관 2개 이상 그룹	
	응답 수 (명)	비율 (%)	응답 수 (명)	비율 (%)
대학설립 인가 전	40	58.0	12	63.2
대학설립 인가 통보 이후 학생 모집 전 단계	27	39.1	7	36.8
학생 모집 후 개교 직전	2	2.9	0	0
기타	0	0	0	0
합계	69	100	19	100



※ 현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신설 의학교육기관(신설대학) 인증 규정에서는 아래 그림에서 제시한 기간에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예비인증’과 ‘임시인증’을 부여합니다.



4. 현재와 같이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학생 모집 전에 ‘예비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체		소속기관 2개 이상 그룹	
	응답 수 (명)	비율 (%)	응답 수 (명)	비율 (%)
예	67	97.1	19	100
아니오	2	2.9	0	0
기타	0	0	0	0
합계	69	100	1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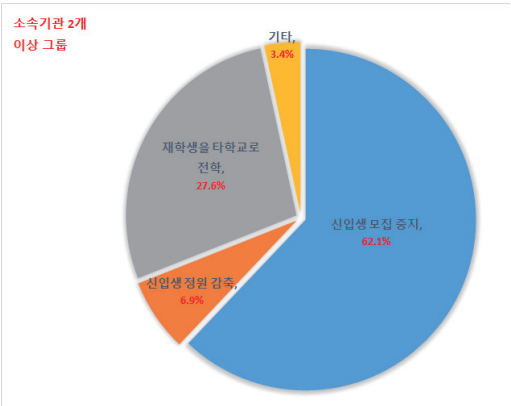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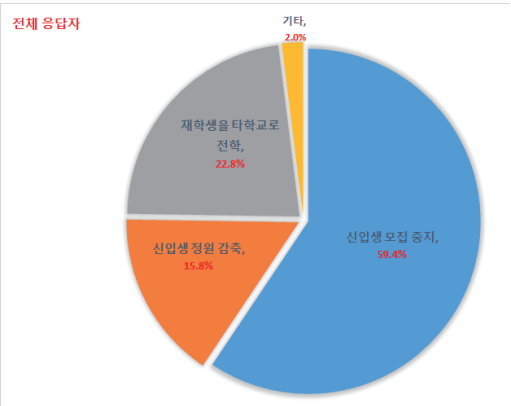
5. 만약 ‘예비인증’단계에서 불인증을 받았을 경우 ‘학생모집 불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체		소속기관 2개 이상 그룹	
	응답 수 (명)	비율(%)	응답 수 (명)	비율(%)
예	64	92.8	18	94.7
아니오	2	2.9	0	0
기타 (1-2년 유예, 유예, 1년 유예기간 주고 그 이후 불가 주어도 됨)	3	4.3	1	5.3
합계	69	100	19	100

6. 만약 ‘임시인증’단계에서 불인증을 받았을 경우 신설 의학교육기관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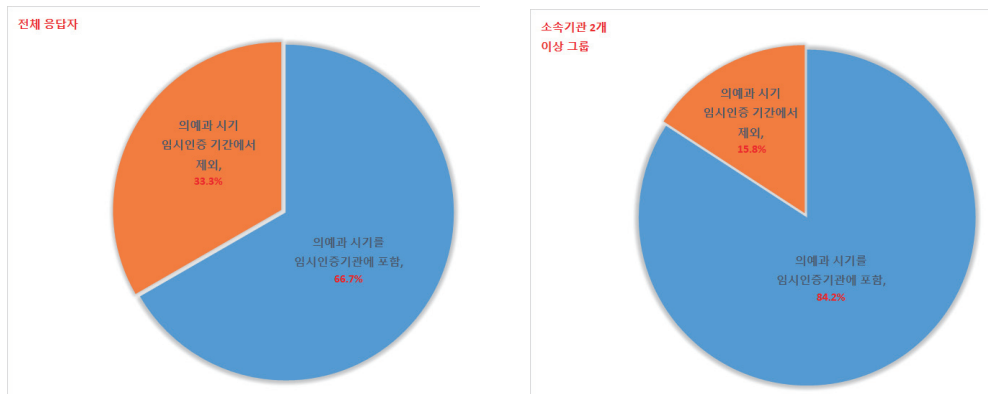
(※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는 평가결과를 당해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한 학과 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전체		소속기관 2개 이상 그룹	
	응답 수 (명)	비율 (%)	응답 수 (명)	비율 (%)
신입생 모집 중지	60	59.4	18	62.1
신입생 정원 감축	16	15.8	2	6.9
재학생을 타 학교로 전학	23	22.8	8	27.6
기타 (6개월 이내 재인증 실시, 재학생은 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 없음)	2	2.0	1	3.4
합계	101	100	2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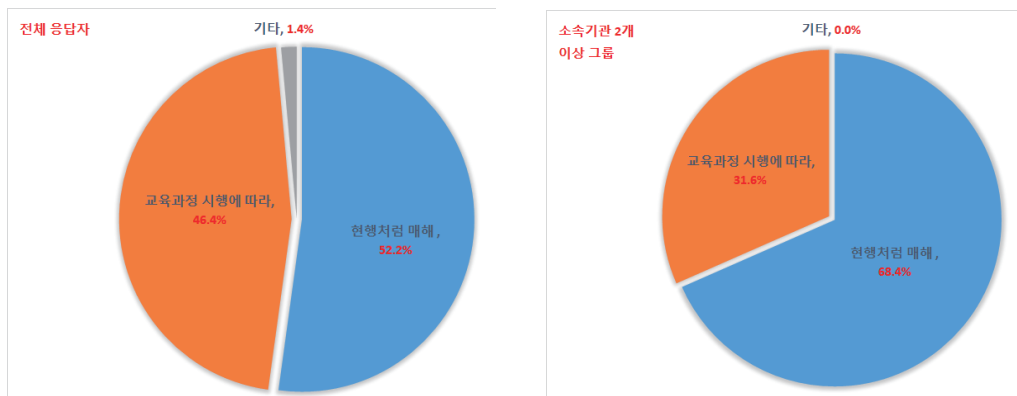
7. 신설 의학교육기관 ‘임시인증’ 기간에 의예과 시기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체		소속기관 2개 이상 그룹	
	응답 수 (명)	비율(%)	응답 수 (명)	비율(%)
신설 의학교육기관은 특수한 상황이므로 의예과 시기를 임시인증 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	46	66.7	16	84.2
기존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교육 인증에도 의예과 시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시인증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	23	33.3	3	15.8
기타 (기존 의학교육 평가인증에도 의예과 과정을 포함하도록 개선 해야 함)	0	0	0	0
합계	69	100	1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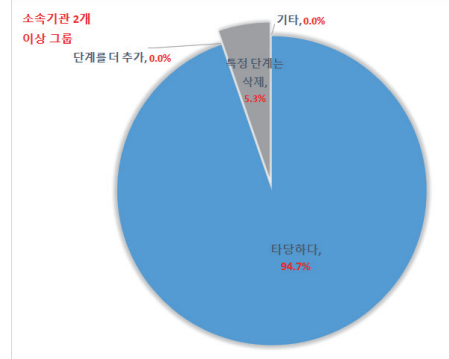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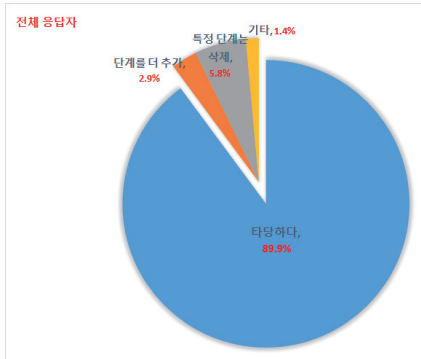
8. 신설 의학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준비도를 평가하기 위한 ‘임시인증’의 적절한 시기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체		소속기관 2개 이상 그룹	
	응답 수 (명)	비율(%)	응답 수 (명)	비율(%)
현행처럼 매년 평가인증 받는 것이 적절하다.	36	52.2	13	68.4
교육과정 시행(예: 의예과, 기초의학/임상의학 강의 및 실습, 임상실습)에 따라 평가인증 받는 것이 적절하다.	32	46.4	6	31.6
기타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하기에 교육과정 종료시점 이후에 평가해야 한다.)	1	1.4	0	0
합계	69	100	1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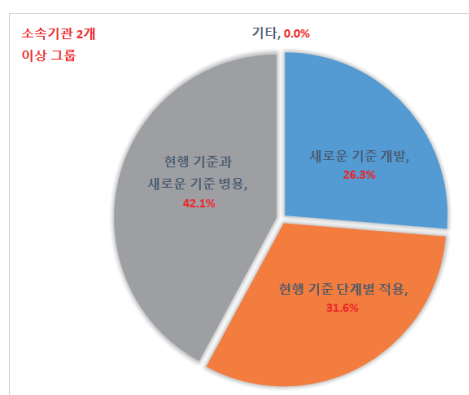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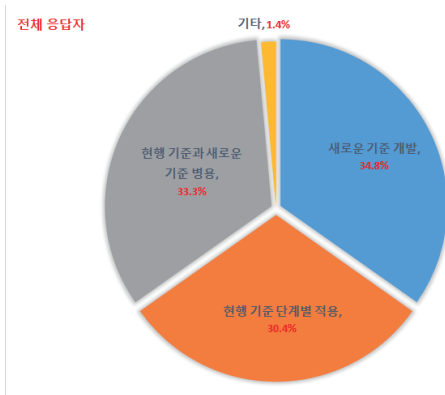
9. 현재 규정에는 신설대학 평가인증이 ‘예비인증’과 ‘임시인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세분화하여 신설 의학교육기관의 교육 준비도와 과정 진행 단계에 따라 ① 학생모집 전(예비인증), ② 기본의학과정 시작 전(임시인증), ③ 임상실습 시작 전(임시인증), ④ 졸업시점(정규인증)의 4단계로 구분하여 인증기준을 달리한다면 이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체		소속기관 2개 이상 그룹	
	응답 수 (명)	비율(%)	응답 수 (명)	비율(%)
타당하다	62	89.9	18	94.7
단계를 더 추가해야한다: 의예과	2	2.9	0	0
특정 단계는 삭제해야 한다:				
- 3단계 인증으로 졸업생 배출과 의사국시 응시가 가능 하므로 4단계를 불필요(정규 평가인증 실시)	4	5.8	1	5.3
- 2단계, 3단계, 4단계 각 1명				
기타 (대학에서 할 일이고, 의평원은 최종 1회만 하면 된다. 의학교 육학회의 컨설팅을 통해 정상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	1	1.4	0	0
합계	69	100	19	100



10. 신설 의학교육기관에 적용할 평가인증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체		소속기관 2개 이상 그룹	
	응답 수 (명)	비율(%)	응답 수 (명)	비율(%)
신설 의학교육기관에 적용할 새로운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24	34.8	5	26.3
현행 평가인증 기준을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21	30.4	6	31.6
현행 평가인증 기준과 새로운 인증기준을 병용해야 한다.	23	33.3	8	42.1
기타 (현행 평가인증 기준을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하되, 기본여건에 해당하는 기준에 대해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 판단근거와 충족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	1.4	0	0
합계	69	100	19	100



11.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과 규정 개발에 대하여 고려할 점 또는 전해주시길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1) 1. 적정 전임교원 확보, 2. 적정 교육시설 확보, 3. 적정 임상실습 교육병원 확보
- 2) good doctor 양성에 대한 책임있는 의대신설이 필요하다.
- 3) 교육프로그램, 인적/물적 지원, 기준미달 시 제재 방안 마련
- 4) 기본적으로 신설의대 설립을 반대하지만, 사회에 대한 책무 및 학생과 가족의 안녕을 고려한다면 의과대학의 신설은 매우 "엄정한 심의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 5) 단계별로 다르게 평가해야 하며, 평가기간을 짧게 해야 한다.
- 6) 매우 엄격해야 함. 의학교육기관 교육이념과 사명이 갖춰진 교육기관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의사 양성소가 아닙니다.
- 7) 새 기준과 규정이 '법제화'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신설 의학교육기관을 개설하려는 주체에 따라(ex 교육부, 복지부, 의료재단..) 평가기준의 적용에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 8) 선제적 대처가 필요합니다.(결정적 사항 등이 발생하기 전에)
- 9) 설립인가 전 반드시 평가인증 과정을 도입하여야 함
- 10) 수고 많으세요
- 11) 신설 기관은 과정운영의 노하우나 제반 환경이 미흡할 수 있으니 유예에 대하여 기존 의대보다 완화하거나 극복할 재평가 등의 기회를 가이드하여 줄 필요가 있다.
- 12) 신설 의과대학이 의학교육의 시작이므로 학생들을 위해 반드시 인증이 필요함
- 13) 신설 의학교육기관 인증에 대한 평가기준 뿐 아니라 전체적인 평가기준에 대해 해당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대학병원 현실 상 "진료"중심 사고에 병원 정책이 몰입되어 있고, 또한 의대 내에서는 "연구"점수 중심으로 교수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교육"도 "평가"도 정상화 되는 것이 힘들고, 관심이 많은 교수만 교육에 대한 책임을 전담하고 금방 지쳐버리게 되는 이런 부분을 "인증기준"에서 규정을 만들면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교육에 헌신하는 교수에게 연구점수, 진료점수보다 더 많은 아니면 최소한 동일한 점수가 부여되는지에 대해 평가기준을 추가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14) 신설 의학교육기관은 현재 의학교육기관 인증에 맞게 갖춰진 후에 설립인가가 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15) 신설기관은 일괄적이 아니라 단계적 인증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 16) 의대 인가 전에 의평원의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 17) 의사인력 수 조절을 위한 평가인증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18) 의평원이 규제기관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 평가 후 지원이 가능하도록(조기에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9) 인성관련 평가의 고려가 필요함
- 20) 정치적인 면에 좌우되지 않도록 자율적이고도 독립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21) 제2의 서남의대가 나오지 않도록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2)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학생모집은 학생들에게 큰 피해이다. 그 전에 방지하고 막는 법안, 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 선진국은 의과대학 설립당시부터 신설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을 적용하여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가진 평가인증을 적용하였다. 평가인증 기관에 좀 더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가에서의 지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평가는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좀 더 까다로운 방향으로..
- 23) 학생 실습병원이 규정에 맞게 기준 정하여야 하고, 교수 충원이 충분히 기준에 맞게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 24) 현실적으로 인가 전에 평가인증을 실시하여 설립인가 여부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바람직한 의사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임을 어필하여 정부와 적절한 협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부록 7]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단계별 기준안

1단계(예비인증) 기준: 학생 모집 전

구분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63개)	
1 사 명 과 성 과	1	1	1-1. 대학의 사명이 있다.(1단계)
		2	의과대학의 사명에는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다양한 의학 분야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 그리고 졸업 후 교육과 평생 학습하는 의사양성을 위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3	의과대학은 사명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2	1	의과대학은 자율성이 보장되고, 교수와 교직원 이 교육과정의 설계와 실행, 그에 필요한 자원 활용 등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3	1	의과대학은 사명에 근거하여 졸업성과를 규정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학생이 동료 학생, 교수진, 보건의료 인력, 환자와 보호자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2 교 육 과 정	1	1	1-1. 주요 이해관계자가 대학의 사명과 졸업성과의 수립에 참여하고 있다.(1단계)
		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에 근거한 전체 교육과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3	2-1.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있다.(1단계)
	2	1	3-1. 평등원칙에 따른 교육과정이 있다.(1단계)
		2	1-1. 분석과 비판적 사고를 포함하는 과학적 방법의 원칙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다.(1단계)
		3	2-1. 의학연구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다.(1단계)
	3	1	3-1. 근거중심의학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다.(1단계)
		2	1-1.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이 있다.(1단계)
		3	1-1. 교육과정위원회가 있고, 교육과정위원회는 의도한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1단계)
	4	1	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위원회에 교직원과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고 있다.
		2	의과대학 교육은 졸업 후 교육을 감안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4 학 생	1	1	1-1. 객관적인 원칙에 근거한 입학정책이 있다.(1단계)
		2	의과대학은 특별전형 모집요강에 입학정원과 선발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3	1	1-1. 학업상담 제도가 있다.(1단계)
		2	2-1.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1단계)
		3	3-1. 사회적, 재정적, 개인적 요구를 다루는 학생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1단계)
		4	의과대학은 학생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5	5-1. 학생전용 기숙사가 있다.(1단계)
		6	의과대학은 학생상담과 지원에 관련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4	1	의과대학은 사명, 교육과정 설계, 관리, 평가와 그 외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학생대표의 적절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학생활동과 학생의 자치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구분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63개)	
5 교 수	1	1	1-1. 기초의학 분야별로 교수를 확보하고 있다.(1단계)
		2	의과대학은 의학교육 담당기구가 있고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수가 있다.
		3	1-1. 의료인문학 교수를 확보하고 있다.(1단계)
		4	4-1. 임상의학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있다.(1단계)
		5	의과대학은 교수를 채용할 때 연구, 교육, 임상분야 업적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6	의과대학은 기초의학, 의학교육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 교수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채용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	1	1-1. 교육, 연구, 봉사활동 간의 균형을 이루는 교수 개발 정책이 있다. (1단계)
		2	2-1. 교수업적평가 제도가 있다.(1단계)
		3	의과대학은 신입교수를 위한 의학교육 연수과정에 신입교수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4	4-1. 학생교육이나 학술활동 이외의 학회활동이나 공공 목적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교수업적 평가기준이 있다.(1단계)
		5	5-1. 교수 모두가 전체 교육과정을 숙지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1단계)
		6	6-1. 교육을 위한 연수와 교수개발에 교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1단계)
6 교 육 자 원	1	1	의과대학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 기본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2	의과대학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 지원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3	의과대학은 학생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4	의과대학은 학생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있고 그에 대해 적절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5	의과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대비 학생교육 관련 직접비용이 적절하다.
		6	의과대학은 개인 교수실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고, 적절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7	의과대학은 교수들의 연구를 위한 적절한 공간과 시설 설비를 갖추고 있다.
		8	의과대학은 교직원, 학생, 환자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3	1	의과대학은 교육활동에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구성원이 전자교육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	1	의과대학은 의학연구역량을 개발하는 정책이 있다.
		2	2-1. 연구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다. (1단계)
		3	의과대학은 학생의 연구시설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5	1	의과대학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2	2-1. 교육 전문성 활용을 위한 정책이 있다.(1단계)
	6	1	1-1. 교직원과 학생이 국내외의 교육 기관과 교류를 위한 지원정책이 있다.(1단계)

구분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63개)	
8 대 학 운 영 체 계 와 행 정	1	1	의과대학은 교육, 교수, 학생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직자가 임명되어 있다.
		2	2-1. 학장과 보직자가 직무 관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가 있다.(1단계)
		3	의과대학은 대학운영을 위한 적절한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를 갖추고 있다.
	2	1	의과대학은 교육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학장과 보직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3	1	의과대학은 교육예산을 포함한 교육관련 재정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교육적 요구에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4	1	의과대학은 행정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적정 수의 행정업무 담당직원을 확보하고 있다.
	5	1	의과대학은 보건의료분야 및 보건의료 관련분야와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2단계(임시인증) 기준: 개교 후

구분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80개)
1 사 명 과 성 과	1	1 의과대학은 대학의 사명을 정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보건의료분야의 관계자들이 인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의 사명에는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다양한 의학 분야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 그리고 졸업 후 교육과 평생 학습하는 의사양성을 위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3 의과대학은 사명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2	1 의과대학은 자율성이 보장되고, 교수와 교직원이 교육과정의 설계와 실행, 그에 필요한 자원 활용 등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1 의과대학은 사명에 근거하여 졸업성적을 규정하고 있다.
	3	2 의과대학은 학생이 동료 학생, 교수진, 보건의료 인력, 환자와 보호자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적을 공개하고 있다.
	4	1 의과대학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학의 사명과 졸업성적의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2 교 육 과 정	1	1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에 근거한 전체 교육과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평등 원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2	1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분석과 비판적 사고를 포함하는 과학적 방법의 원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의학연구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근거중심의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1 1-1. 의과대학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 이해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 개념과 원리를 학습할 수 있는 기초의학 교육과정이 있다.(2단계)
		2 2-1. 기초의학에서 학습한 지식, 개념 및 원리가 임상의학의 학습에 연계될 수 있는 기초의학 교육과정이 있다.(2단계)
	4	1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2 2-1. 임상실습 전 준비교육이 있다.(2단계)
	6	1 의과대학은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 간에 적절한 조화를 이룬 교육과정이 있다.
		2 2-1. 수평 통합된 교육과정이 있다.(2단계)
	7	1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교육과정위원회는 의도한 교육성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위원회에 교직원과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고 있다.
	8	1 의과대학 교육은 졸업 후 교육을 감안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3 학 생	1	1 의과대학은 학생평가의 원칙,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2-1. 학생평가는 지식, 술기, 태도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2단계)
		3 3-1. 학생평가의 방법과 형식이 다양하다.(2단계)
		4 4-1. 학생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2단계)

구분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80개)	
평가	2	1	1-1. 의도한 교육성과와 교육방법에 적합한 학생평가가 있다. (2단계)
		2	2-1. 의도한 교육성과에 도달하기 위한 학생평가가 있다.(2단계)
		3	3-1. 학생의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생평가가 있다.(2단계)
		4	4-1. 형성평가와 총괄평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2단계)
4 학생	1	1	의과대학은 객관적인 원칙에 근거한 입학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2	1	의과대학은 특별전형 모집요강에 입학정원과 선발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3	1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학업상담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학생의 사회적, 재정적, 개인적 요구를 다루는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4	의과대학은 학생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5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주거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기숙사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6	의과대학은 학생상담과 지원에 관련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4	1	의과대학은 사명, 교육과정 설계, 관리, 평가와 그 외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학생대표의 적절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학생활동과 학생의 자치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5 교수	1	1	의과대학은 세계의학교육연합회가 권고하는 기초의학 분야별로 적절한 수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의학교육 담당기구가 있고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수가 있다.
		3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분야에 전임 교수 또는 전담 교수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다.
		4	의과대학은 각 임상의학 전공과목별로 적절한 수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있다.
		5	의과대학은 교수를 채용할 때 연구, 교육, 임상분야 업적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6	의과대학은 기초의학, 의학교육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 교수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채용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	1	의과대학은 교수가 교육, 연구, 봉사활동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신입교수를 위한 의학교육 연수과정에 신입교수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4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학생교육이나 학술활동 이외의 학회활동이나 공공 목적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5	의과대학은 교수 모두가 전체 교육과정을 숙지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이와 관련된 교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6	의과대학은 교육을 위한 연수와 교수개발에 교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분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80개)	
6 교육 자 원	1	1	의과대학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 기본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2	의과대학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 지원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3	의과대학은 학생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4	의과대학은 학생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있고 그에 대해 적절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5	의과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대비 학생교육 관련 직접비용이 적절하다.
		6	의과대학은 개인 교수실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고, 적절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7	의과대학은 교수들의 연구를 위한 적절한 공간과 시설 설비를 갖추고 있다.
		8	의과대학은 교직원, 학생, 환자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2	1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의 환자와 충분한 수의 환자를 확보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상실습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진료행위에 대한 관리체계가 있다.
	3	1	의과대학은 교육활동에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구성원이 전자교육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	1	의과대학은 의학연구역량을 개발하는 정책이 있다.
		2	의과대학은 연구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학생의 연구시설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5	1	의과대학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 개발, 교수법과 평가방법 개발에 대한 교육 전문성 활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6	1	의과대학은 교직원과 학생이 국내외의 교육 기관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다.
7. 교육 평가	1	2	2-1. 교육평가체계가 있다.(2단계)
8 대 운 영 체 계 와 행 정	1	1	의과대학은 교육, 교수, 학생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직자가 임명되어 있다.
		2	의과대학은 학장과 보직자가 직무관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와 실적이 있다.
		3	의과대학은 대학운영을 위한 적절한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를 갖추고 있다.
	2	1	의과대학은 교육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학장과 보직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3	1	의과대학은 교육예산을 포함한 교육관련 재정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교육적 요구에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4	1	의과대학은 행정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적정 수의 행정업무 담당직원을 확보하고 있다.
정	5	1	의과대학은 보건의료분야 및 보건의료 관련분야와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3단계(임시인증) 기준: 임상실습 시작 전

구분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88개)	
1 사 명 과 성 과	1	1	의과대학은 대학의 사명을 정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보건의료분야의 관계자들이 인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의 사명에는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다양한 의학 분야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 그리고 졸업 후 교육과 평생 학습하는 의사양성을 위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3	의과대학은 사명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2	1	의과대학은 자율성이 보장되고, 교수와 교직원 이 교육과정의 설계와 실행, 그에 필요한 자원 활용 등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1	의과대학은 사명에 근거하여 졸업성과를 규정하고 있다.
	3	2	의과대학은 학생이 동료 학생, 교수진, 보건의료 인력, 환자와 보호자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4	1	의과대학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학의 사명과 졸업성과의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2 교 육 과 정	1	1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에 근거한 전체 교육과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평등 원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2	1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분석과 비판적 사고를 포함하는 과학적 방법의 원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의학연구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근거중심의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1	의과대학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 이해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 개념과 원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3단계)
		2	의과대학은 기초의학에서 학습한 지식, 개념 및 원리가 임상의학의 학습에 연계될 수 있도록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4	1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5	1	1-1. 졸업 후 진료가 가능한 임상학과 임상실습 교육과정이 있다.(3단계)
		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에 임상실습 전 준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3	3-1. 적절한 임상실습 교육기간이 있다.(3단계)
		4	4-1. 환자안전을 강조한 임상실습 교육과정이 있다. (3단계)
	6	1	의과대학은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 간에 적절한 조화를 이룬 교육과정이 있다.
		2	의과대학은 관련 학문, 학과, 과정이 수평 통합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7	1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교육과정위원회는 의도한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위원회에 교직원과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고 있다.
	8	1	의과대학 교육은 졸업 후 교육을 감안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구분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88개)	
3 학 생 평 가	1	1	의과대학은 학생평가의 원칙,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학생평가에 지식, 술기, 태도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다양한 평가방법과 형식을 사용하여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4	의과대학은 학생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1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와 교육방법에 적합하게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학생의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4	의과대학은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균형있게 실시하고 있다.
4 학 생	1	1	의과대학은 객관적인 원칙에 근거한 입학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2	1	의과대학은 특별전형 모집요강에 입학정원과 선발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3	1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학업상담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학생의 사회적, 재정적, 개인적 요구를 다루는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4	의과대학은 학생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4	5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주거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기숙사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6	의과대학은 학생상담과 지원에 관련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1	의과대학은 사명, 교육과정 설계, 관리, 평가와 그 외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학생대표의 적절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5 교 수	1	2	의과대학은 학생활동과 학생의 자치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1	의과대학은 세계의학교육연합회가 권고하는 기초의학 분야별로 적절한 수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의학교육 담당기구가 있고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수가 있다.
		3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분야에 전임 교수 또는 전담 교수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다.
		4	의과대학은 각 임상의학 전공과목별로 적절한 수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있다.
		5	의과대학은 교수를 채용할 때 연구, 교육, 임상분야 업적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2	6	의과대학은 기초의학, 의학교육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 교수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채용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1	의과대학은 교수가 교육, 연구, 봉사활동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신입교수를 위한 의학교육 연수과정에 신입교수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2	4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학생교육이나 학술활동 이외의 학회활동이나 공공 목적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5	의과대학은 교수 모두가 전체 교육과정을 숙지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이와 관련된 교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6	의과대학은 교육을 위한 연수와 교수개발에 교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분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88개)
6 교 육 자 원	1	1 의과대학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 기본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2 의과대학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 지원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3 의과대학은 학생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4 의과대학은 학생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있고 그에 대해 적절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5 의과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대비 학생교육 관련 직접비용이 적절하다.
		6 의과대학은 개인 교수실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고, 적절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7 의과대학은 교수들의 연구를 위한 적절한 공간과 시설 설비를 갖추고 있다.
		8 의과대학은 교직원, 학생, 환자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6 교 육 자 원	2	1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의 환자와 충분한 수의 환자를 확보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상실습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진료행위에 대한 관리체계가 있다.
	3	1 의과대학은 교육활동에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구성원이 전자교육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의학연구역량을 개발하는 정책이 있다.
	4	1 의과대학은 연구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학생의 연구시설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5	1 의과대학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 개발, 교수법과 평가방법 개발에 대한 교육 전문성 활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6	1 의과대학은 교직원과 학생이 국내외의 교육 기관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다.
7 교 육 평 가	1	1 의과대학은 교육의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교육평가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교육평가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2	1 의과대학은 교육자와 학생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다.
8 대 학 운 영 체 계 와 행 정	4	1 의과대학은 교육 모니터링과 교육평가 활동에 주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다.
	1	1 의과대학은 교육, 교수, 학생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직자가 임명되어 있다.
		2 의과대학은 학장과 보직자가 직무관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와 실적이 있다.
		3 의과대학은 대학운영을 위한 적절한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를 갖추고 있다.
		4 의과대학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교육병원마다 학생교육과 연구를 총괄하는 보직자가 있고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2	1 의과대학은 교육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학장과 보직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3	1 의과대학은 교육예산을 포함한 교육관련 재정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교육적 요구에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4	1 의과대학은 행정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적정 수의 행정업무 담당직원을 확보하고 있다.
	5	1 의과대학은 보건의료분야 및 보건의료 관련분야와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4단계(임시인증) 기준: 졸업 직전

구분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92개)	
1 사 명 과 성 과	1	1	의과대학은 대학의 사명을 정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보건의료분야의 관계자들이 인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의 사명에는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다양한 의학 분야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 그리고 졸업 후 교육과 평생 학습하는 의사양성을 위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3	의과대학은 사명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2	1	의과대학은 자율성이 보장되고, 교수와 교직원들이 교육과정의 설계와 실행, 그에 필요한 자원 활용 등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1	의과대학은 사명에 근거하여 졸업성과를 규정하고 있다.
	3	2	의과대학은 학생이 동료 학생, 교수진, 보건의료 인력, 환자와 보호자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4	1	의과대학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학의 사명과 졸업성과의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2 교 육 과 정	1	1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에 근거한 전체 교육과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평등 원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2	1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분석과 비판적 사고를 포함하는 과학적 방법의 원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의학연구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근거중심의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1	의과대학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 이해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 개념과 원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3단계)
		2	의과대학은 기초의학에서 학습한 지식, 개념 및 원리가 임상의학의 학습에 연계될 수 있도록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4	1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5	1	의과대학은 졸업 후 진료가 가능하도록 임상학과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에 임상실습 전 준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적절한 임상실습 교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4	의과대학은 환자안전을 강조한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6	1	의과대학은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 간에 적절한 조화를 이룬 교육과정이 있다.
		2	의과대학은 관련 학문, 학과, 과정이 수평 통합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7	1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교육과정위원회는 의도한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위원회에 교직원과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고 있다.
	8	1	의과대학 교육은 졸업 후 교육을 감안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구분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92개)
3 학 생 평 가	1	1 의과대학은 학생평가의 원칙,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학생평가에 지식, 술기, 태도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다양한 평가방법과 형식을 사용하여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4 의과대학은 학생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1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와 교육방법에 적합하게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학생의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4 의과대학은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균형있게 실시하고 있다.
4 학 생	1	1 의과대학은 객관적인 원칙에 근거한 입학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2	1 의과대학은 특별전형 모집요강에 입학정원과 선발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3	1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학업상담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학생의 사회적, 재정적, 개인적 요구를 다루는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4 의과대학은 학생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5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주거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기숙사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6 의과대학은 학생상담과 지원에 관련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4	1 의과대학은 사명, 교육과정 설계, 관리, 평가와 그 외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학생대표의 적절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학생활동과 학생의 자치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5 교 수	1	1 의과대학은 세계의학교육연합회가 권고하는 기초의학 분야별로 적절한 수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의학교육 담당기구가 있고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수가 있다.
		3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분야에 전임 교수 또는 전담 교수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다.
		4 의과대학은 각 임상의학 전공과목별로 적절한 수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있다.
		5 의과대학은 교수를 채용할 때 연구, 교육, 임상분야 업적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6 의과대학은 기초의학, 의학교육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 교수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채용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	1 의과대학은 교수가 교육, 연구, 봉사활동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신입교수를 위한 의학교육 연수과정에 신입교수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4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학생교육이나 학술활동 이외의 학회활동이나 공공 목적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2	5 의과대학은 교수 모두가 전체 교육과정을 숙지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이와 관련된 교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6 의과대학은 교육을 위한 연수와 교수개발에 교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분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92개)	
6 교육 자 원	1	1	의과대학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 기본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2	의과대학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 지원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3	의과대학은 학생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4	의과대학은 학생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있고 그에 대해 적절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5	의과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대비 학생교육 관련 직접비용이 적절하다.
		6	의과대학은 개인 교수실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고, 적절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7	의과대학은 교수들의 연구를 위한 적절한 공간과 시설 설비를 갖추고 있다.
		8	의과대학은 교직원, 학생, 환자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6 교육 자 원	2	1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의 환자와 충분한 수의 환자를 확보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상실습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진료행위에 대한 관리체계가 있다.
	3	1	의과대학은 교육활동에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구성원이 전자교육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	의과대학은 의학연구역량을 개발하는 정책이 있다.
		2	의과대학은 연구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학생의 연구시설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5	1	의과대학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 개발, 교수법과 평가방법 개발에 대한 교육 전문성 활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6	1	의과대학은 교직원과 학생이 국내외의 교육 기관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다.
7 교육 평 가	1	1	의과대학은 교육의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교육평가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교육평가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2	1	의과대학은 교육자와 학생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다.
		1	의과대학은 학생과 졸업생 코호트에서 사명, 의도한 교육성과, 교육과정, 투입한 자원에 관련된 수행능력을 분석하고 있다.
	4	1	의과대학은 교육 모니터링과 교육평가 활동에 주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다.
8 대 학 운 영 체 계	1	1	의과대학은 교육, 교수, 학생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직자가 임명되어 있다.
		2	의과대학은 학장과 보직자가 직무관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와 실적이 있다.
		3	의과대학은 대학운영을 위한 적절한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를 갖추고 있다.
		4	의과대학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교육병원마다 학생교육과 연구를 총괄하는 보직자가 있고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2	1	의과대학은 교육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학장과 보직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구분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92개)	
와 행 정	3	1	의과대학은 교육예산을 포함한 교육관련 재정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교육적 요구에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4	1	의과대학은 행정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적정 수의 행정업무 담당직원을 확보하고 있다.
	5	1	의과대학은 보건의료분야 및 보건의료 관련분야와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9 지 속 적 개 선	0	1	의과대학은 대학 발전계획이 있고, 대학 발전기금을 운용하며, 동문 또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2	의과대학은 지속적인 질 관리와 개선을 위해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를 갖추고 있고,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3	의과대학은 평가인증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 실적이 있다.